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국내대책관)

2014. 12.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무역정책관 · 투자정책관 · 통상국내대책관

2014 ·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무역정책관 1

<일반회계>

- (1) 국내전시회지원 4
- (2) 전략물자수출통제기반구축 10
- (3)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23
- (4) 대한상사중재원지원 30
-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6
- (6)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 44
- (7) 무역보험기금출연 50
- (8) 통합무역정보서비스기반구축사업(정보화) 58

<지특회계>

- (9)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 69

2. 투자정책관 73

<일반회계>

- (1) 해외진출기반구축 76
- (2) 남북산업자원협력 82

<지특회계>

- (3) 투자유치기반조성 87
- (4)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94

3. 통상국내대책관 99

<일반회계>

- (1)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102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514,928	422,428	355,423	△67,005	△ 15.9
○ 국내전시회지원 (1131-301)	8,407	7,381	6,794	△ 587	△ 8
○ 2015밀라노세계엑스포 한국관참가(1131-304)	-	6,700	문화부이관	-	-
○ 전략물자수출입 통제기반구축(1133-501)	4,009	4,859	4,785	△ 74	△ 1.5
○ 지역전문가육성및공급 (1134-302)	3,262	4,062	2,936	△ 1,126	△ 27.7
○ 대한상사중재원지원 (1136-301)	1,100	1,100	1,100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37-301)	247,000	216,008	220,451	4,443	2.1
○ 중소기업수출경쟁력 강화(1137-305)	-	40,581	47,794	7,213	17.8
○ 무역보험기금출연 (1138-801)	250,000	140,000	70,000	△ 70,000	△ 50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정보화)(1144-301)	1,150	1,737	1,563	△ 174	△ 10
<지특회계>	270	379	340	△ 39	△ 10.3
○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 (3361-301)	270	379	340	△ 39	△ 10.3
총계	515,198	422,807	355,763	△67,044	△ 15.9

국내 전시회 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내전시회지원	8,407	7,381	6,794	△587	△8

* 사업코드 : 21-11-0-110-113-1100-1131-301

* 담당자 : 무역정책국장(원동진), 무역진흥과장(이경호, 044-203-4030), 사무관(최준근, 40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정책보조)
사업시행주체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사업목적

- 국제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소로서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육성
- 전시산업 인력양성, 국제협력, 통계조사 등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 5,069백만원

- 산출내역 : Global TOP 전시회 1,300백만원 + 유망전시회 2,809백만원 + 합동·통합전시회(인센티브) 60백만원 + 기타전시회 900백만원

② 전시산업 기반육성사업 : 1,725백만원

- 산출내역 : 국제협력사업 250백만원 + 전시산업 정보화사업 230백만원 + 전시산업 홍보사업 290백만원 + 국내전시사업자 육성사업 460백만원 + 국내전시회 평가관리사업 49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제경쟁력을 갖춘 Global TOP 전시회 지원 등 전시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증진에 기여 필요
 - 전시회는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
 -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
- 고부가가치 사업인 전시산업 진흥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 유망한 전시회의 경우 국가·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
 - * 미국의 CES(미국 전자제품 박람회)와 같은 Global TOP 전시회는 3일의 전시기간 중 24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5억불의 현장계약 성사
 - *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은 약 6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 해외바이어 방문을 통한 외화가득 및 일자리창출 효과 창출 가능
- 세계 각국의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지원 중으로, 국내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 지속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내전시회지원	8,407	7,381	6,794	△587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5,137	5,769	5,069	△700	△12.1
▪ 전시산업 기반구축	1,753	1,612	1,725	113	7
▪ KINTEX 건립 지원	1,517	-	-	-	-
□ 비목	8,407	7,381	6,794	△587	
▪ 민간경상보조(320-01)	6,890	7,381	6,794	△587	
▪ 민간자본보조(320-07)	1,517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세계적 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등 우수전시회 육성
 - 2020년 무역규모 2조불 달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해외바이어 및 업체가 찾아오는 국제수준의 전시회 육성을 위해 우수전시회에 바이어유치비, 해외마케팅비 등 지원
 - Global TOP 전시회 지원 : 국제적 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를 3~5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
 - 사업평가·관리 및 무역전시 기반 조성 : 국비지원 국내전시회 사업 성과의 체계적 평가·관리체계 구축
 - Global TOP 및 주요 전시회의 홍보, 인력양성, 해외바이어 DB구축 등 무역전시 기반구축 사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 58억원(58개×1억원) ▪ 전시산업 기반구축 : 16억원
'15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50억원(50개×1억원) ▪ 전시산업기반구축 : 18억원
'16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 42억원(42개×1억원) ▪ 전시산업기반구축 : 18억원
'17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47억원(47개×1억원) ▪ 전시산업기반구축 : 18억원
'18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40억원(40개×1억원) ▪ 전시산업기반구축 : 15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및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추진경위

- '98년 무역전시사업 육성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지원('00년 10억원) 개시
- '03.4월 국내전시회 지원 및 평가관리 강화 방안 대통령께 보고(무역진흥확대회의)
- '04.6월 전시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확정·발표(경제장관간담회)
- '05.4월 대통령 전시·컨벤션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표명(KINTEX 개장식)
- '08.5월 글로벌TOP 전시회 육성 및 전시장 확충 필요성 대통령 보고(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08.11월 국내전시회, 상담회 등에 해외유력바이어 유치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방안 대통령 보고(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08.12월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시행('08.9.22)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 기본계획(5년)' 확정·발표
- '09.11월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무역전시회 육성' 수립·시행
- '10.6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 확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내전시회지원	53	61	84	74	6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61			61	61		
	(61)	()	()	(61)	(61)	()	()
'13년	84			84	84		
	(84)	()	()	(84)	(84)	()	()
'14년	74			74	74		
	(74)	()	()	(74)	(74)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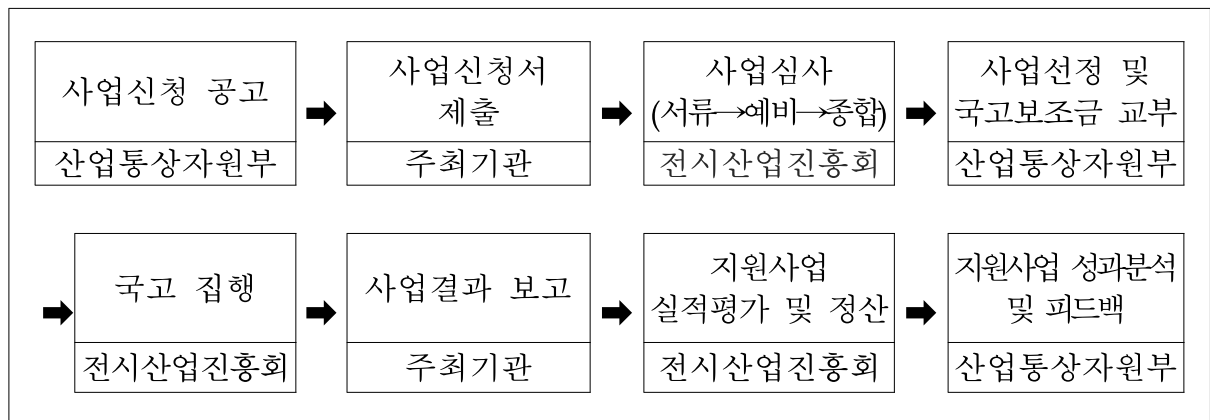
- '12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65점)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 하에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2013년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13 예산 산업위 검토의견
 - 소액 다건 방식의 전시회 지원사업 지양 필요. 동 지적에 따라 '14년 국고지원 전시회 선정 시 예산계획 대비 선정건수 축소 실시
 - * ('13년 계획) 유망전시회 등 58개 선정 → ('13년 실제) 53개 선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무역전시회 지원은 무역촉진 활동으로 분류되어 WTO 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여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전시회에 대한 지원확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국 가	지 원 내 역
홍 콩	매년 교역 신고부담금에서 얻은 수익금을 일종의 지원금 형태로 준정부 기관인 HKTDC에 교부하여 동 기관이 년 130억원 수준의 국내전시회를 개최지원
대 만	국내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초청을 위하여 건강검진 보조, 숙박 및 항공 운임의 제공
영 국	산업부에서 전략적 육성산업을 위한 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의 1/2을 지원하고 관련업계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독 일	전시회 참가업체의 참가경비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AUMA(독일전시협회)를 통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미 국	국내 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상무부 FCS 조직을 활용, 전시회 홍보 및 바이어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프랑스	지방정부나 상공회의소 등이 통상활동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전시회 참가경비의 일부를 지원
싱가포르	일류 국제전시 도시로 육성을 위한 IEC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인증 전시회에 대한 이중과세 감면 및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전략물자수출통제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전략물자수출통제기반구축	4,009	4,859	4,785	△74	△1.5

* 사업코드 : 21-11-0-110-113-1100-1133-501

* 담당자 : 무역정책관(원동진), 무역안보과(이태휘, 044-203-4050), 사무관(이학동, 4052), 주무관(김헌석, 405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04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전략물자 취급 기업,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
지원조건	민간 보고
사업시행주체	전략물자관리원

2. 사업목적

- 9.11 테러 이후 국제무역 질서로 부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의 국내 이행기반 조성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효율성 확보
- 우리 기업의 불의의 피해를 적시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서 무역안보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 절실

< 주요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 동향 >

- UN안보리결의 1540호('04.4) :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내 법제화 및 이행·처벌 의무화
- UN안보리결의 1929호('10.6)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금융제재, 자산동결, 화물검색 등 다양한 對이란 제재수단 규정
 - * UN안보리는 제재결의를 통해 이란(1929호, '10.6), 리비아(1970호, '10.6), 수단(1945호, '10.10), 이라크(1546호, '04.6) 등 11개국을 강력히 제재중
- UN안보리결의 外 핵무기(NSG), 미사일(MTCR), 생화학무기(AG), 재래식 무기(WA) 등 4개 분야의 국제수출통제체제 이행 (우리나라는 모두 가입)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전략물자관리원 기관운영비 : 2,920백만원(151백만원 증)

- 전략물자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등
 - 인건비(연봉, 제수당, 퇴직연금) : 2,149백만원
 - 기본운영비(사무실 임·관리비, 용품, 기타 관리비) : 771백만원

② 수출관리 지원사업 : 1,865백만원(225백만원減)

① 전략물자 안전수출 지원 (351백만원)

- (전략물자 판정) 기업 신청에 따라 수출 물품 및 기술 등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172백만원)
- (우려국 안전거래 지원) 對이란 거래기업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거래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점검·지원 강화(179백만원)
- 확인서 심사 및 민원응대(39), 조사연구 및 설명회 등 업계지원(20), 시스템 유지관리(120)

② 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 (422백만원)

- (인프라 및 이행지원 도구 개발) 국가R&D과제 등의 전략기술 여부를 연구개발 시작단계부터 사전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및 지원도구 개발, 제도 정비 및 이행지원 등 기반 강화 (362백만원)
- (전략기술 자율관리체계 구축) 전략기술 관리체계가 취약한 대학 등이 전략기술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개발 등 지원 (60백만원)
 - * 카이스트 등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관리 시범사업 및 전문가 자문사업 등 시행

③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확산 (773백만원)

- (CP 구축지원 및 제도 내실화)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체제(CP) 구축과 정부의 CP 지정심사 및 제도 개선·운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60백만원)

-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조직, 규정, 절차 등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 CP)를 구축한 기업에 대해 심사 후 지정하는 제도
- * 조직진단, 취급 전략물자 현황파악, 해외 거래상대방 분석, 내부 직원 교육, 사내 규정 마련 등 종합 컨설팅을 통해 CP구축을 지원
- (중소기업 이행지원) 중소기업이 전략물자 관리제도 미인지로 불법수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집중 교육·홍보 및 컨설팅 (447백만원)
 - *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제도 미인지로 인한 불법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이행을 지원할 것”(13.8.19, 을지국무회의의 VIP 지시사항)
 - 자가판정 지원시스템 구축(150), 중소기업 대상 교육·홍보(120), 중소기업 센서스(100), 중소기업 컨설팅 운영(77) 등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 수행
- (전략물자 관리제도 교육·홍보) 불법수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167백만원)
 - 전략물자 및 기술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저하로 불법수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인지도 제고 필요
- (국내외 수출통제 현안 및 동향 조사·분석) 수출통제 국제동향 조사, 제도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 (22백만원)
 - 특히, 최근 對이란 무역제재로 인한 기업 리스크가 급증하여 관련 동향 및 현안조사, 유관기관 협의 수요가 급증
- (전략물자 국제협력) 통제기준 및 통제품목 결정 등 수출통제 국제규범 형성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 (77백만원)
- ④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319백만원)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199), 성능·품질보호(75),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 정보보안 강화(45)

□ 지원 필요성

- 기관운영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기업의 불법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임
- 정부가 수행할 업무중 판정, 조사분석, 교육·홍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위탁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07.6)

- 그러나, 9.11테러 이후 국제무역 질서로 급부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관리원의 역량 확충 절실

* 주요국에 비해 수출통제 전담체제 열악(韓 47명, 美 415명, 日 184명, 英 92명)

- 사업 수행 :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위탁사업 추진재원의 적기지원 필요

- 특히, 중소기업의 불법수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 교육·홍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필요

- 또한, 국제사회의 기술무형이전 통제강화 추세 속에서 국가R&D 사전확인 업무를 통해 전략기술 이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전략물자수출통제기반구축사업	4,009	4,859	4,785	△74	△1.5
▪ 전략물자관리원 기관운영비	2,689	2,769	2,920	151	5.5
▪ 전략물자 안전수출 지원	331	351	351	-	-
▪ 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	155	447	422	△25	△5.6
▪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확산	435	893	773	△120	△13.4
▪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399	399	319	△80	△20.0
☐ 비목(합계)	4,009	4,859	4,785	△74	△1.5
▪ 민간경상보조(320-21)	4,005	4,854	4,785	△69	△1.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	5	-	△5	△1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무역강국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제도·조직 정비
 -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 전략물자 판정·교육·컨설팅 등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자율관리' 방식으로 수출통제 관리체계 전환 및 강화

- 기업 및 연구기관등의 수출통제 관리 및 이행능력 제고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효과가 큰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기반 확충
 -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지원도구 개발을 통해 이행부담 경감
 - 수출통제 의무 이행 확산 및 인식제고를 통해 기업의 불법수출 피해 예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8.59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48.59(48.59억원×1개×100%)
'15	47.85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47.85(47.85억원×1개×100%)
'16	42.11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42.11(42.11억원×1개×100%)
'17	45.4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45.48(38.66억원×1개×100%)
'18	3.866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48.59(48.59억원×1개×1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지원

— < 대외무역법 제29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 —

-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 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 3의2. 제5조제4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⑧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고도화

< 대외무역법 제28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란 비금지 확인서 심사업무 지원

< 對이란 교역 관련 우리 정부 대응현황 >

- UN안보리결의 1929호('10.6.9) 이후 미국 등은 기업에 이란 전략물자 수출 및 이란과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우리나라도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제재조치를 발표('10.9.8)하고 이란 교역·투자 및 대금결제 업무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하는 「교역·투자 非금지 확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대금결제 가능

○ 추진경위

- 추진배경 :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국제규범화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이행 사업으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제31조)에 근거하여 추진

- * 동법 제29조가 '전략물자관리원 설립'을 규정
- * UN안보리결의1540호('04.4.28)에 의거, 모든 회원국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의무화 (수출자는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신청절차 의무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전략물자수출통제기반 구축	32.00	35.60	40.09	48.59	47.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2.00	-	-	32.00	32.00	-	-
	()	()	()	()	()	()	()
'12년	35.60	-	-	35.60	35.60	-	-
	()	()	()	()	()	()	()
'13년	40.09	-	-	40.09	40.09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0년 임시국회 업무보고(국회 지경위 유관기관 업무보고, '10.4월)

- 전략물자 전담조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인원으로 소극적 운영되고 있음 (이종혁 의원)

* 한국 47명, 미국 415명, 일본 184명, 영국 92명, 독일 193명

- UAE 원전품목의 불법 유출을 예방키 위해 판정, 홍보, 교육 등 철저한 관리 필요 (김기현, 이종혁, 정태근 의원)
- 중소기업 등 국내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율관리체제 도입 지원으로 자율준수기업 대폭 확대 필요 (김정훈, 우제창, 이종혁 의원)

- '11년 예산심사(국회 예결위·지경위, '10.11월)

- 전략물자관리원의 『대이란 교역·투자 非금지확인서』 발급업무는 기업의 對이란 수출 및 대금결제 해소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예산 지원 필요 (이화수·이상민 '이상 예결위, 김성희·정영희·김재경 '이상 지경위)

- '13년 예산심사(국회 예결위·지경위, '12.11월)

- 국가R&D과제가 불법이전에 연루될 경우 국가신뢰도 저하 우려되므로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예산 10억 증액 필요 (권성동 의원 '이상 예결위, 이강후·이채익 의원 '이상 지경위)

- '2014년 예산심사(국회 산업위, '13.11월)

- 중소기업 전략물자 제도 이행 지원, 전략물자 판정 처리를 위해 예산 8억 증액 필요 (이채익 위원)
- 판정수요 폭증 및 중소기업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판정인력 증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억 증액 필요 (이강후 위원)

○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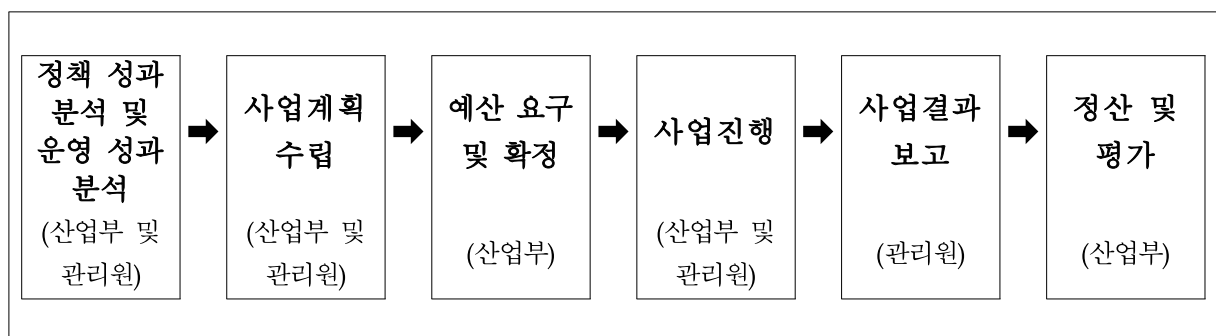
- 전략물자 전담조직 확대 및 UAE 원전수출 관련 판정, 홍보, 교육 등 철저 관리
- 원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강(판정인력 3명), 원전기업 자율준수체제 도입 지원 등 적극 지원 추진
 - * '10년 한전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는 등 기업지원 적극 추진
- 적극적인 자율관리체제 도입 지원으로 자율준수기업 대폭 확대
- 포괄수출허가제도 개선, 인센티브 확대, 컨설팅지원 확대,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전담인력 확충 등 자율준수체제 도입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 추진
 - * 연구기관의 자율준수체제 도입 확대를 위해 3개 기관(ETRI, 항우연, 화학연)에 대해 시범사업 운영('10년)
- '12년 예산요구에 전략물자관리원의 「대이란 교역·투자 非금지확인서」 발급업무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3.02억원)
- '13년 예산에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시행 예산 반영(사업비 0.73억원)
- '14년 예산요구에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시행 관련 증액 요구 및 확정 반영(총 3.65억원, 2.92억원 증)
- '14년 예산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 추가 반영(3억원, 국회심의에 따른 증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채래식무기 등 4개분야 물자가 특정 국가 및 테러조직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협약 체결 운영
- 해외국은 대부분 정부 조직에서 운영하되 장기간 보임으로 전문성 확보

국가	담당부서	담당인원	수출규모 (억불)	수출허가 신청건수
미국	상무부 BIS 국무부 DDTC 재무부 OFAC 등	BIS 415명	('11)14,807	('11)108,501
영국	통상부 ECO 외무성 비확산국 국방부	ECO 92명	('11)4,346	('11)12,515
독일	경제수출통제청 (BAFA)내 2개국	BAFA 193명	('11)13,919	('11)49,000
일본	경산성 안보무역 관리부(3개과) 지역경제산업국	안보무역관리국 84명 지역경제산업국 60명 *안전무역정보센터 40명	('11)8,245	('10)8,300
한국	산업부(1개과), 방사청, 교과부, 통일부	무역안보과 9명 *전략물자관리원 38명	('11)2,783	('11)5,635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1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제도 개요

□ 전략물자 수출통제 배경

- 냉전시대에 서방세계는 對공산권수출관리위원회(COCOM¹⁾)를 결성하여 첨단무기 및 기술의 공산권 유입을 통제('49~'94)
- 脫냉전 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4대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전략물자의 우려국가 및 테러집단 유입을 통제

【 국제 수출관리 체제('13년 기준) 】

통제체제	통제대상물자 및 기술	품목수	회원국	발족
원자력공급국그룹(NSG) ²⁾	핵 무기 (원자력전용, 이중용도품목·기술)	241개 (원자력전용:131개)	48개국	'78년
호주그룹(AG) ³⁾	생화학무기 (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219개	42개국	'85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⁴⁾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185개	34개국	'87년
바세나르체제(WA) ⁵⁾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품목·기술)	759개 (군용:277개)	41개국	'96년
계		1,404개 / HS(10단위) : 1,966여개		

- 9.11테러 이후 대량파괴무기(WMD⁶⁾) 확산방지가 국제안보의 핵심으로 등장했으며,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WMD 비확산의 주요수단으로 부상

□ 국제규범화 동향

- UN안보리결의(1540호, '04.4)를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국제규범화 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행을 의무화
-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결의를 통해 북한(1718호('06), '1874호('09), 2087호('13)), 이란(1737호('06), 1747호('07), 1803호('08), 1929호('10)) 등 11개국 제재 중

1) 對공산권수출관리위원회(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2)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

3) 호주그룹(AG : Australia Group) :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

4)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미사일 관련 통제

5)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 재래식 무기·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

6)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생화학무기·핵무기 등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참고2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 현황

□ 개 요

- '87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 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협약에 모두 가입

* 가입년도 : NSG('95), AG('96), WA('96), MTCR('01), BWC⁷⁾('87), CWC⁸⁾('97)

-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설(Yestrade,'05.2), 전략물자관리원 설립('07.6) 등 지원체제 마련

* Yestrade는 전략물자 판정, 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효율적 이행에 기여

□ 수출통제 제도 주요내용

-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협약에서 지정한 통제물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로 지정·고시
-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기업자체 판정을 통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거쳐 수출

【 국내 수출관리 관련 부처 현황 】

소관부처	근거법령	통제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이중용도용품(Dual-Use)
	방위사업법	일반 방산물자
방 위 사 업 청	대외무역법·방위사업법	주요 방산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전용품목
통 일 부	남북교류협력법	北韓 반출입 물품

□ 운영 현황

- 정부는 정책방향 결정 및 수출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판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
- 온라인시스템(Yestrade)으로 통일부·방사청·관세청의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하며 기업에게 수출관리규범 이행편의 제공

7)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한 국제조약

8) 화학무기금지조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

참고3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관련 처리현황

□ 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현황

(‘14년 11월 기준, 단위 : 건)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품목 판정	자가판정	2,919	10,952	13,707	11,893	8,614	9,491	11,912	18,039	31,921
	· 해 당	122	1,990	1,362	2,931	1,160	3,088	1,705	3,310	2,463
	· 비해당	2,797	8,962	12,345	8,962	7,454	6,403	10,207	14,729	29,458
	사전판정	817	2,670	3,212	2,795	3,701	4,108	7,333	11,725	13,231
	· 해 당	57	194	303	347	483	465	1,491	2,492	1,905
	· 비해당	760	2,476	2,909	2,448	3,218	3,643	5,842	9,233	4,326
수출 허가	허가심사	723	1,451	1,550	1,721	2,210	2,826	3,694	4,014	3,797
	· 허 가	656	1,303	1,408	1,496	1,977	2,783	3,657	3,996	3,785
	· 반 려	66	145	139	222	227	37	37	18	12
	· 거 부	1	3	3	3	6	6	0	0	0

* 註 : 1. 반려사유는 주로 非전략물자, 서류미비(보완요청), 타부처 소관(이관) 등
2. 실적에는 일반방산물자 처리현황 포함

□ 이란교역 및 투자비금지 확인서 처리현황

(‘14년 11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0년 (‘10.9.8~12.31)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1.30 기준)
① 신청서 접수	4,696	15,036	16,787	18,675	15,131
· 화학	2,371	8,464	9,927	10,128	6,723
· 기계	1,370	3,012	3,003	3,401	4,033
· 소재	660	2,335	2,220	2,898	2,562
· 전자	295	1,225	1,637	2,248	1,813*
② 신청서 처리	4,430(14)	14,497(11)	15,877(3)	18,093(83)	14,283(12)
· 화학	2,234(1)	8,162(3)	9,516(1)	9,864(10)	6,389(9)
· 기계	1,321(11)	2,965(7)	2,739(0)	3,310(54)	3,880(3)
· 소재	622(2)	2,205(0)	2,072(1)	2,803(19)	2,330(0)
· 전자	253(0)	1,165(1)	1,550(1)	2,116(0)	1,684(0)*
③ 민원 상담	1,494	1,675	2,206	2,610	2,953
· 전화상담	1,437	1,662	2,176	2,574	2,904
· 방문상담	57	13	30	36	49

* 註 : 분야가 지정되지 않고 접수(2건) 및 처리(1건)된 件 포함

참고4 전략물자관리원 현황

□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제29조

□ 주요경과

- '04. 8. 30, 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개소
- '06. 12. 8, 설립 근거법(대외무역법) 국회 의결
- '07. 6. 5,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 설립배경

- 9.11테러 이후 전략물자 관리가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부상
-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별도의 전문 기관으로 설립

□ 직제 및 정원 : 2본부 6팀, 43명

□ 주요기능

- 전략물자 사전판정
-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의 지원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 예 산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13	'14	'15	항 목	'13	'14	'15
1. 정부보조금	4,009	4,859	4,785	1. 사업비	1,933	3,087	2,050
2. 기타 수탁사업	872	947	50	2. 경상운영비	756	756	771
3. 기타 수입	50	50	135	3. 인사제비	1,894	2,013	2,149
합 계	4,931	5,856	4,970	합 계	4,583	5,833	4,970

* 14년 및 '15년은 예산기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3,262	4,062	2,936	△1,126	△27.7

* 사업코드 : 21-11-0-113-1100-1134-302

* 담당자 : 무역정책국장(원동진), 무역정책과장(044-203-4020), 사무관(양해구, 402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2.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전문 역량이 융합된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을 양성, 무역업계에 공급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

-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특화지역의 언어, 상관습, 법령 및 무역실무 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인재 양성

* 동 사업은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립”, ‘13.128)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청년인재 양성 방안으로 지역별·산업별 특화과정을 통하여 청년인재 공급

- 무역전문교육비 : 2,236백만원
 - 24개 사업단 약 7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역기본교육, 해외특화 지역 심화교육, 현장마케팅 실습, 무역컨설팅 등 실시
 - * 대학 무역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현장실습 등 420시간 이상 교육
- 사업운영비 : 700백만원
 - 24개 대학(사업단) 운영지원비 600백만원(각 대학당 25백만원)
 - * 인건비(600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개발, 기획/점검/평가 비용 : 1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중소기업은 창조경제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수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기대
-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우리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9%를 차지하지만, 이 중 수출기업은 8.3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2.7%에 불과
- 수출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지역별 전문인력 부족
 - * 중소기업 글로벌역량 100점 중 44점 수준, 인재육성(38.8%) 및 현지화 전략 강화(31.5%)가 글로벌화의 핵심요인(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지역전문가 확보 애로
 - 인건비부담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로 자체 인재육성 곤란
 - * 수출 중소기업 중 수출규모 10만달러 이하의 초보기업의 7.3만개(81.9%)
- 수출기업 역량 및 니즈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인재 공급 필요

- (내수/수출초보) 지역의 무역정보(바이어·전문가 POOL, 인증 등 수출 절차)나 수출 전반에 걸친 컨설팅이 우선적으로 필요
- (수출유망) 이미 시장을 개척한 기업은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 및 분야별 전문가 필요 → 중견 및 퇴직인력, 해외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단기 전문인력 지원
- (중견/상소)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지역(국가)별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 → 글로벌무역전문가 재편, 글로벌인턴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인재양성

[참고]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이하 GTEP)의 취업연계 효과

- 수료생 취업률 : ‘10년(76.2%) → ‘11년(61.6%) → ‘12년(62.4%) → ‘13년(69.8%)
 - * ‘13년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취업률 : 55.6%
 - ** ‘13년 GTEP 수도권 8개 대학 취업률 69.3%(수도권대학 평균취업률 56.7%)
 - *** ‘13년 GTEP 지방 16개 대학 취업률 70.3%(지방대학 평균취업률 54.9%)
- 취업률 산식 : (취업자 / 취업대상자) x 100
 - * 취업대상자 : 과정 수료생 중 학부 졸업생(재학생, 유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 수료생 취업 지원
 - * 취업역량강화 : 산학협력을 통한 무역현장 해외마케팅실습 역량 교육, GTEP 대학 선후배간 멘토링행사 및 취업 특강, 취업역량강화 온라인교육
 - * 구직 지원 : 정부 및 협회 주관 취업박람회(온/오프라인) 이력서 등록 등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3,262	4,062	2,936	△1,126	△27.7
☐ 비목					
▪ 민간경상보조	3,262	4,062	2,936	△1,126	△27.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전문가 수급 애로 해소 및 정보·컨설팅 지원
- 맞춤형 취업연계 청년지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0.62	▪ 지역전문맞춤형 컨설팅(4),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양성(32.62), 지역 마스터과정(4)
'15	29.36	▪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29.36)
'16	32.62	▪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32.62)
'17	32.62	▪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32.62)
'18	32.62	▪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32.6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련국정과제 : 5-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5-1 중소·중견기업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

(VIP 지시사항, '13.1.28) *경제 2분과 업무보고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현지 전문가도 부족해서 업무를 못내는 거예요.....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경위

- '00. 7월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
- '01. 9월 Trade Incubator 사업 추진
- '07. 7월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폐지 및 Trade Incubator 사업을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확대개편
- '13. 1월 지역전문가 육성 및 공급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화
- '13. 7월 지역전문가 육성 및 공급전략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41	41	33	41	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1)	(-)	(-)	(41)	(41)	(-)	(-)
'12년	(41)	(-)	(-)	(41)	(41)	(-)	(-)
'13년	(33)	(-)	(-)	(33)	(3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주요국의 무역전문인력 양성제도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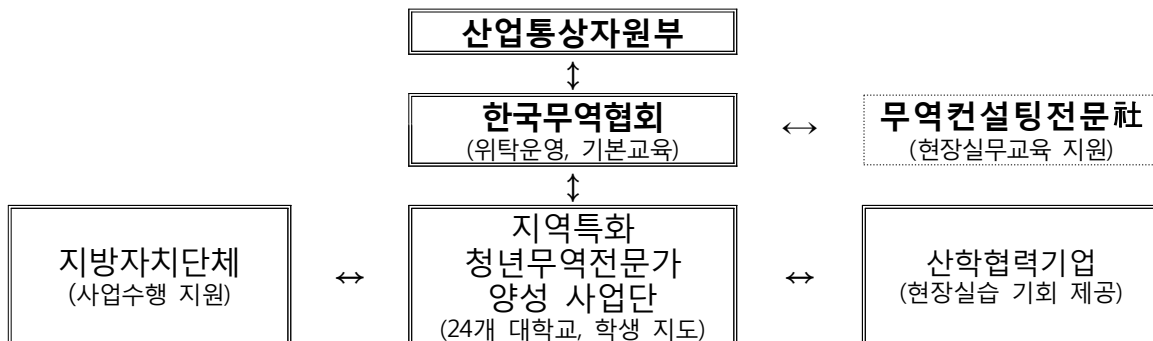
구분	북미	유럽	아시아
사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등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특징	대학 중심	민간주도형	정부주도형
주요 내용	• 학문적 접근(단계별 교육 및 실습훈련)	• 단기과정 위주 •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	• 정규학위 또는 인증 과정 (장기과정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양성 성격 • 대학에 대한 상무부, 교육부의 적극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교육 중심 • 재교육 성격 • 단계별 수료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재교육의 복합적 성격
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와 공급이 연계되는 시스템(수요 반영 수업 내용 구성) • 산학협동을 통한 이론과 실제 접목 • 평생교육 지원체제 • 학문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교육 • 일자리 앞선 기능 • 대학 및 상무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이 수출기업을 입체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실용성 있는 교육(기업의 수요와 수강생 니즈 충족) • 단기교육을 통한 실전 배치 •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조직(풍부한 재원, 실무적 교과과정 도입) • 수출업무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 자격증 및 인증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차원에서의 무역 전문 인력 양성제도 • 지부에서의 교육으로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 활용 • 주변 개도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 무역확대효과 기대 • 교육기관 위상 확고 (학위 및 자격증 인정) • 교육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장치 • 엄격한 제도 관리(입학 및 자격증 부여)
벤치마킹 사례	미국 : CIBER, SBDC, NASBITE 캐나다 : FITT	영국 : IOE 아일랜드 : eBSI 수출 아카데미 네덜란드 : Fenedex	일본 : IDEAS 대만, 싱가포르 : ITI 중국 : WTO연구원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연구」)

(5) 사업추진절차

-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교내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을 설치하여 産·學·官 연계형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총괄, 국고금 지원
- 한국무역협회 : 무역실무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운영 전반
- 대 학 교 : 사업단 운영, 요원 교육 및 지원
- 산학협력기업 : 수출지원활동, 국내외 인턴쉽 등 현장실습 교육기회 제공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개요

1. 사업 개요

□ 목적

-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청년들의 취업 촉진('07년~)
-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국 중심으로 언어, 상 관습, 진출 전략과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지역특화 전문 인재 육성

□ 개요 및 성과

- 참여인원 : 전국 4년제 24개 대학 재학생 600여명
- 교육기간 : 1년 3개월
- 교육내용 : 기본교육, 지역특화교육, 현장무역컨설팅, 산학협력 현장 실습 등 총 420시간 이상
- 주요 성과
 - '07년부터 현재까지 4,174명의 수료생을 배출, 총 2,489만 달러의 수출실적 및 70.0%의 취업률 달성

2. 교육 과정 : 총 420시간 이상(15학점)

① 기본교육 : 60시간, 3학점

· 지역특화마케팅기법, 종합무역실무, 글로벌매너, 무역환경 등

② 심화교육 : 230시간 이상, 9학점 이상

- 지역특화과정(90시간 이상, 3학점 이상)
 - : 특화지역언어, 특화지역 진출전략 및 성공사례, 이문화 상관습 등
- 정규무역과정(90시간 이상, 6학점 이상) : 무역전공교육
- 특별과정(50시간 이상, 학점자유) : 전자무역(필수), FTA(필수), 취/창업 등

③ 현장실무컨설팅 교육 : 30시간 이상, 학점자유

· 실무이론교육(12시간), 현장실습 컨설팅, 특화지역 시장진출보고서 작성

④ 산학협력 중소기업 현장지원 : 100시간 이상, 3학점 이상

- 산학협약체결,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 사후관리, 계약체결, 선적, 대금회수 등에 이르는 일련의 수출입실무 실습 활동
- 협력업체의 국내외전시회 및 상담회 지원 참가, 협력업체에 단기현장 실습 근무 등 총괄적인 현장지원 실습

대한상사중재원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1,100	1,100	1,100	-	-

* 사업코드 : 21-11-00-110-113-1100-1136-301

* 담당자 : 무역정책관(원동진), 무역정책과장(조영태), 주무관(심현준, 044-203-402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클레임 해결목표 13,685건(중재 385건, 알선 및 상담 13,300건)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대한상사중재원

2. 사업목적

-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클레임과 상거래상의 분쟁에 대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중재, 알선 및 상담 등을 통하여 분쟁예방 및 해결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클레임 해결 서비스지원 : FTA시대에 부응하는 클레임 해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00백만원 요구('14년 대비 동일액)
 - 중재사업지원비 : 950백만원
 - 중재사건관리 : 440백만원
 - 중재인단관리 : 35백만원
 - 중재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175만원
 - 전산시스템 구축(3차년도) : 300백만원

- 알선·상담사업 지원비 : 150백만원
 - 알선·상담사건 관리 : 146 만원
 -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중재는 무역클레임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
 - 법원의 재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인 법정제도**
 - 무역클레임 발생시 양국간 법제도 차이, 송달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 중재를 통해 해결
- 중재·알선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쟁해결비용 절감**
 -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하나 법원의 3심제인 소송에 비하여 단심으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므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중재와 소송비용 비교 >

(단위 : 천원)

신청금액	중재관리요금	소송비용	
		1심	3심
1천만원	45	110	406
2천만원	90	155	609
3천만원	135	230	841
5천만원	225	321	1,246
1억원	450	546	2,259
2억원	850	946	4,059

- 무료 알선 및 상담을 통한 소상공인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유도로 불필요한 법률비용 경감

- 중재 및 알선상담사업의 공익성에 기인한 국고지원 필요
 -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내지 영세자영업자임
 - 전체 중재건의 약 60%가 신청금액 2억원 이하 소액사건
 -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공공재적 기능을 지님
 - 중재, 알선 및 상담의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쟁 해결절감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대한 저변 확대가 필수적임
- 이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업수입(중재수수료) 증대는 한계가 있고, 공공재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효율적인 대 이용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기반 사건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웹사이트 개편 실시 필요
 - 전산시스템 개편 및 신규 구축을 위한 총 3개년도의 개발사업 추진
 - '13년도 사건관리시스템 개편(3억원), '14년도 중재원 웹사이트 개편 및 통합(3억원), '15년도 시스템 고도화(3억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대한상사중재원지원	1,100	1,100	1,100	0	0
▪ 중재사업지원비	950	950	950	0	0
▪ 알선상담사업지원비	150	150	150	0	0
☐ 비목	1,100	1,100	1,100	0	0
▪ 민간경상보조(320-01)	1,100	1,100	1,100	0	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중 등 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무역분쟁 증가에 대비
 - 소액중재사건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분쟁 애로 해결에 기여
 - * 중재의 약 60%가 분쟁금액 2억원 이하의 중소상공인 관련 사건
 - 중재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 * 중재사건처리기간 단축으로 클레임 비용 경감 추진
- 범국민적인 분쟁해결·예방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기존의 무역 분야 등의 중재서비스 증진과 함께 ISD 관련 투자 중재, 금융 등 중점육성분야 관련 분쟁해결 역량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65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71만원 × 380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5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천원 × 13,300건) ▪ 전산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통합웹사이트구축) 	
'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65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69만원 × 385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5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천원 × 13,300건) ▪ 전산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시스템연계작업) 	
'16	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787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202만원 × 390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81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4천원 × 13,350건) 	
'17	1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849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215만원 × 395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96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5천원 × 13,380건) 	
'18	8.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722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81만원 × 400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67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2천원 × 13,400건)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중재법 보칙 제40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재법 보칙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무역거래 기반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66. 3 : 대한상공회의소내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창립
- '70. 3 :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 설립
- '80. 8 :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개편
- '93년부터 국고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대한상사중재원지원	9	8	11	11	1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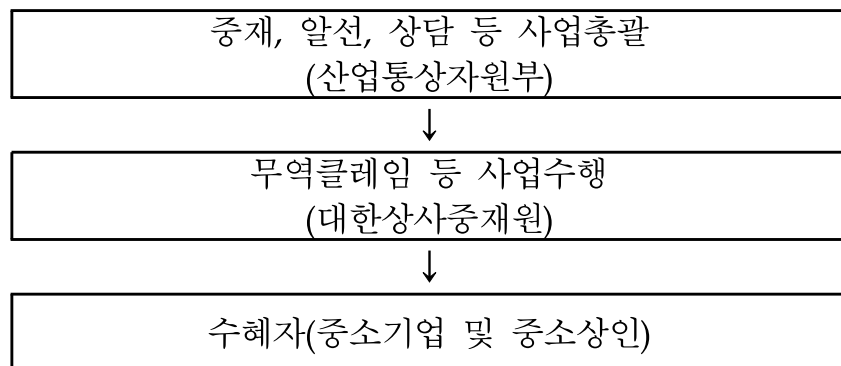
○ 국회 예결위 김태원의원 서면질의(2014년)

- 중재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예산 추가지원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 싱가포르 정부가 건립한 복합건물(맥스웰챔버스)에 입주(4백억원 투입)
 - * '10년 신규건물 입주 후 중재사건 지속적 증대, '12년 200건 최초 돌파
-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 홍콩정부 소유건물(홍콩국제금융센터)에 입주
 - 연간 임대료 무상지원(1원) 및 최근 임대면적 2배 확장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법률사무부 산하 기관
 - 2013년 중재사건 : 1,256건, 재원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보조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클레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09	'10	'11	'12	'13
중 재	318	316	323	360	338
알 선	664	801	915	938	916
상 담	7,184	8,645	11,339	11,500	11,697
합 계	8,166	9,762	12,577	12,798	12,951
증가율(%)	0.1	20	29	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7,000	216,008	220,451	4,443	2.1

* 사업코드 : 21 - 11 - 0 - 113 - 1100 - 1137 - 301

* 담당자 : 무역정책관(원동진 국장), 무역진흥과장(이경호 과장), 사무관(김희석)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2~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수지차보전)
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 인력유치 지원을 통하여 수출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 바이어찾기, 무역사절단, 전시회, 현지법인설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 해외시장정보 생산, 전파 및 컨설팅
 - * 해외 마케팅 및 투자진출 컨설팅, 해외시장정보 수집·설명회 개최 등
 - 외국인 투자유치
 -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활동 전개, 기(既) 진출 외투기업 고충처리 등
 -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연수 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조직망 운영비 : ('14) 63,492백만원 → ('15) 63,907백만원 (+415백만원)
- 해외조직망 : ('14) 63,932백만원 → ('15) 63,807백만원
 - * 해외무역관(126개) 임차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 지원
 - 국내조직망 : ('14) 100백만원 → ('15) 100백만원
 - * 인천공항사무소 임차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 지원
- ② 인건비 : ('14) 86,813백만원 → ('15) 92,372백만원 (+5,559백만원)
- 정규직(727명), 별정직(82명), 별도정원(5명) 및 해외현지직원(492명) 등
 - '14년 인력증원(6명) 잔여 예산 및 '15년 증원(54명) 6개월분 예산 반영
 - 인건비 공통증액 3.8% 반영
- ③ 경상경비 : ('14) 6,960백만원 → ('15) 7,295백만원 (+335백만원)
- 사옥 시설관리, 제세공과금, 자산관리비 등 기관 운영 기본경비
- ④ 사업비 : ('14) 46,873백만원 → ('15) 45,007백만원 (△1,866백만원)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투자진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사업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증감
합 계	46,873	45,007	△1,866
중소기업마케팅지원	27,131	25,566	△1,565
해외마케팅지원	9,019	9,018	△1
해외투자진출	4,099	3,599	△500
외국인투자유치사업	3,624	3,624	-
정보조사 및 홍보사업	3,000	3,200	200
전문인력 및 연수사업	-	-	-

- ⑤ 예비비 : ('14) 11,870백만원 → ('15) 11,870백만원 (전년수준)
- 경영평가 성과급 전년수준 반영

□ 지원 필요성

-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 신흥시장개척,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KOTRA의 해외 수출마케팅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동강화 필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전략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해외진출촉진), ‘내수·수출 균형경제’(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정부의 중점 투자방향인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 및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및 동반성장 협력의 생태계 조성
- KOTRA 예산은 국고예산 중 국내·외 조직망운영, 인건비, 경상경비 등 경직성 기관운영비 예산 비중이 높음(‘14년 66.4%)
 - 특히 해외무역관 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성 경비는 현지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증액 소요가 발생하는 특수성이 존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7,000	216,008	220,451	4,443	2.1
▪ 조직망운영비	60,492	63,492	63,907	415	0.7
▪ 인건비	83,631	86,813	92,372	5,559	6.4
▪ 경상경비	6,896	6,960	7,295	335	4.8
▪ 사업비	84,111	46,873	45,007	△ 1,866	4.0
▪ 예비비	11,870	11,870	11,870	-	-
□ 비목(합계)	247,000	216,008	220,451	4,443	2.1
▪ 민간경상보조(320-01)	247,000	216,008	220,451	4,443	2.1

* '14년부터 세부사업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이 분리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기침체 타개 : 무역·투자성과 조기창출, 틈새시장 개척
-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고도화 : 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 전략적 투자 유치·진출, 글로벌 플랫폼 확충
- 세계경제 상생모델 구현 : 일자리 창출·전문인력 양성, 신흥시장과의 동반성장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망운영비: 635, ▪ 인건비: 868, ▪ 사업비: 469, ▪ 경상운영비: 69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5	2,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924, ▪ 사업비: 450, ▪ 경상운영비: 73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6	1,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924, ▪ 사업비: 180, ▪ 경상운영비: 73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7	2,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924, ▪ 사업비: 289, ▪ 경상운영비: 73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8	1,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망운영비: 430, ▪ 인건비: 924, ▪ 사업비: 185, ▪ 경상운영비: 73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법률 제 1059호, '62.4.24 개정)
 - * '95.8.4개정(투자업무추가), '03.9.29 개정(무역투자인력양성 기능추가)
 - 대외무역법 제 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물품 등의 수출입 지원
 1. 무역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대외무역법 제 8조 :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 '09.4.22 개정(해외진출지원센터 신설)

○ 추진경위

- '62년 무역진흥 등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한 이래 정부 지원
- '9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기술협력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국가무역투자진흥기관(TPO)으로 출범
- '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신설 및 '99.10.26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설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강화
- '02년 해외지역본부제를 출범, 8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본사인력을 전진배치하여 해외 현장지원인력을 보강
- '03년 Invest KOREA 출범, '04년 정보조사본부, '05년 전략마케팅본부, 고객지원본부 및 '07년 Global Korea를 각각 신설
- '06.10월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서비스·정보제공 창구를 산자부로 일원화 결정
 - * KOTRA에 의료산업 해외마케팅지원센터 설치·운영
- '08.1월 중기지원체제 일원화를 신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 VIP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08.5.16) 및 정부 방침 확정통보('09.5.30)에 따라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KOTRA로 일원화
- '08. 4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전문인력유치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KOTRA 內 「Contact KOREA」 설치·운영 방안 확정
 - * '08.9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개소
- '09년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09.10.1)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09.10.15)
- '11년 국가브랜드, 국제개발협력, 자원 및 에너지개발, 방산물자교역지원 기능 법제화('11.3.30)
- '14년 해외 전문인력유치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업무 법제화('14.1.2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2,147	2,486	2,160	2,205

* '14년부터 국정과제(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예산이 세부사업으로 분리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예비비 및 불용사유('12년)
 - 전용(400백만원) : 코트라의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사업'(1,900백만원)에서 400백만원을 전용하여 수출마케팅지원 확대사업*에 사용
 - * 베트남 한류 유망상품전 2.5억,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 1.6억
 - 예비비사용(5,000백만원) : '12년 하반기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비상대책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예비비 배정
 - * 제 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건의 ('12.8.14) → 국무회의 의결('12.9.4)
 - *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17개 전략사업 수행
 - 불용(482백만원) : FTA 지원체계 구축지원(2,000백만원) 사업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받아 380백만원 미배정, 280백만원 불용, 동 사업 중 전문가 채용사업에서 잔액 91백만원 발생하여 반납
 - * 예비비(5,000백만원) 사용에서 11백만원 잔액(잡비, 환차 등) 발생하여 반납
- 전용, 예비비 및 불용사유('13년)
 - 불용(1,600백만원) : 국가재정여건을 반영한 예산절감 1,600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756			1,756	1,756		
	(1,756)	()	()	(1,756)	(1,756)	()	()
'12년	1,933			1,933	1,928.2		
	(1,933)	()	()	(1,933)	(1,928.2)	()	(4.8)
'13년	2,486			2,486	2,700		
	(2,486)	()	()	(2,486)	(2,700)	()	(1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평가결과

<평가결과(2008 ~ 2013)>

평가대상 연 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2008	보통	양호	우수
2009	우수	우수	-
2010	우수	양호	-
2011	우수	우수	우수
2012	우수	우수	-
2013	우수	우수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각국은 정부보조금에 의한 무역·투자진흥기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직접 보조금이 금지되어 있는 WTO 체제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들 기관을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투자유치 지원활동 확대 추세

<주요국 무역진흥기관별 국내외 조직 및 인원 운영현황 비교>

구 분		일본(JETRO)	한국(KOTRA)	홍콩(HKTDC)
인원	명	1,580	1,157	900
예산	연간(백만불)	435	212	257
	1인당(백만불)	0.28	0.18	0.29

* KOTRA 예산은 2011년 기준 일본(JETRO) 및 홍콩(HKTDC)에 비해 1인당 예산 규모에서 지원율이 60% 수준에 그침.

(5) 사업추진절차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 보조금 예산요구(매년 4-5월) → 산업부 예산심의 및 조정(6월) →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조정(7-8월) → 국회 심의·조정(10월) → 차년도 국고 보조금 예산 확정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11~12월) → 사업집행(연중) → 사업종료 후 결산(차년도 1분기) → 산업부 결산 심사(차년도 1분기) → 경영평가(차년도 1분기) → 국회결산 심사 및 확정(차년도 3분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설립 목적

-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계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 설립 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주요 업무 및 기능

-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 바이어찾기, 무역사절단, 전시회, 현지법인설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 해외시장정보 생산, 전파 및 컨설팅
 - * 해외 마케팅 및 투자진출 컨설팅, 해외시장정보 수집·설명회 개최 등
- 외국인 투자유치
 -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활동 전개, 既진출 외투기업 고충처리 등
- 국내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연수 등

□ 정원(현원) : 727명(711명) ('14년 12월 기준)

□ 조직

- 국내(본사) : 5본부 24실(센터) 7단
- 해외 : 9지역본부 122개 무역관(84개국)

지 역	중국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	일본	아시아	중남미	CIS	계
무역관(개소)	18	21	10	15	10	4	21	14	9	122

* BI(수출인큐베이터, 17개), IT지원센터(3개) 운영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40,581	47,794	7,213	17.8

* '14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분리 됨

* 사업코드 : 21 - 11 - 0 - 113 - 1100 - 1137 - 305

* 담당자 : 무역정책관(원동진 국장), 무역진흥과장(이경호 과장), 사무관(김희석)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투자진출, 정보조사, 투자유치, 정부수입사업 등
총사업비	'62~계속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수지차보전)
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유치 지원을 통하여 수출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해외지사화 사업 : 해외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무역관 전담직원이 중소기업 수출지원 현지지사 역할 수행
- 해외전시회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계약 창출
- 중견기업 글로벌기업 육성사업 :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50:50 매칭펀드로 사업비를 조성 후 KOTRA와 협력하여 기업별 해외마케팅 로드맵 도출 및 시행
- 글로벌마케팅 인턴 :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국내 미취업 청년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통해 해외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모델 제시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지사화 사업 : ('14) 12,155백만원 → ('15) 13,155백만원

- 전담직원과 기업이 1:1 매칭, 수시로 업무연락, 기업 요청사항 지원
- * 2,600개사 x 5.06백만원

<지원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수(개사)	2,106	2,074	2,079	2,205	2,400
전담직원수(명)	283	300	300	322	330

② 해외전시회 지원 : ('14) 17,471백만원 → ('15) 19,453백만원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망전시회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지원(마케팅지원, 임차·장치·운송 등)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시 소요경비 일부 지원(임차료 및 운송비 등 직접경비)
-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16,833백만원,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 2,620백만원

③ 중견기업 글로벌기업 육성사업 : ('14) 9,155백만원 → ('15) 10,386백만원

- 국내외 지원 삼각구도'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로드맵 수립으로 목표시장 진출확대 지원
 - 참가기업 : 목표시장(2개) 및 타겟 바이어 설정, 진출전략 제시
 - KOTRA 본사 : 기업-무역관 연계, 로드맵 시행/모니터링, 매칭펀드 관리
 - 해외무역관 : 목표시장 심층분석, 로드맵 실행, 직·간접 마케팅 수행
- * 130개사 지원 : 10,086백만원, 맞춤형 컨설팅 : 300백만원

④ 글로벌마케팅 인턴 : ('14) 1,800백만원 → ('15) 1,800백만원

- 해외진출 기업 또는 해외 현지기업에서 6~9개월간 인턴으로 근무
-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하여 체재비, 항공임, 여행자보험 등 지원
- * 글로벌마케팅인턴 120명 x 15백만원

⑤ 전시회 연계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 : ('15 신규) 3,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새로운 성장동력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 고용창출 등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
-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화 및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40,581	47,794	7,213	17.8
▪ 지사화사업	-	12,155	13,155	1,000	8.2
▪ 해외전시회지원	-	17,471	19,453	1,982	11.3
▪ 중견기업글로벌기업 육성사업	-	9,155	10,386	1,231	13.4
▪ 글로벌 마케팅인턴	-	1,800	1,800	-	-
▪ 전시회 연계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	-	-	3,000	3,000	100%
□ 비목(합계)	-	40,581	47,794	7,213	17.8
▪ 민간경상보조(320-01)	-	40,581	47,794	7,213	17.8

* '14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이 분리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기침체 타개 : 무역·투자성과 조기창출, 틈새시장 개척
-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고도화 : 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 전략적 투자 유치·진출, 글로벌 플랫폼 확충
- 세계경제 상생모델 구현 : 일자리 창출·전문인력 양성, 신흥시장과의 동반성장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06	▪ 지사화사업 : 122, ▪ 해외전시회 지원 : 174,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92, ▪ 글로벌마케팅 인턴 : 18
'15	478	▪ 지사화사업 : 131, ▪ 해외전시회 지원 : 195,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104, ▪ 글로벌마케팅 인턴 : 18, ▪ 전시회연계 비즈니스실무자 육성 : 30
'16	448	▪ 지사화사업 : 131, ▪ 해외전시회 지원 : 195,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104, ▪ 글로벌마케팅 인턴 : 18
'17	448	▪ 지사화사업 : 131, ▪ 해외전시회 지원 : 195,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104, ▪ 글로벌마케팅 인턴 : 18,
'18	448	▪ 지사화사업 : 131, ▪ 해외전시회 지원 : 195,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104, ▪ 글로벌마케팅 인턴 : 1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법률 제1059호, '62.4.24 제정)
 - * '95.8.4 개정(투자업무 추가), '03.9.29 개정(무역투자인력양성 기능추가)
- 대외무역법 제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물품 등의 수출입 지원
 1. 무역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대외무역법 제8조 :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 '09.4.22 개정(해외진출지원센터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	-	-	-	406	478

* '14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분리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14년 예산 과목구조 개편시 국정과제 분리방침에 따라 별도사업으로 분리
- 결산 내역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13년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각국은 정부보조금에 의한 무역·투자진흥기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직접 보조금이 금지되어 있는 WTO 체제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들 기관을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투자유치 지원활동 확대 추세

<주요국 무역진흥기관별 국내외 조직 및 인원 운영현황 비교>

구 분		일본(JETRO)	한국(KOTRA)	홍콩(HKTDC)
인원	명	1,580	1,157	900
예산	연간(백만불)	435	212	257
	1인당(백만불)	0.28	0.18	0.29

* KOTRA 예산은 2011년 기준 일본(JETRO) 및 홍콩(HKTDC)에 비해 1인당 예산 규모에서 지원율이 60% 수준에 그침.

(5) 사업추진절차

- (지사화 사업) [01] 참가 신청 → [02]무역관의 시장성검토 및 참가 업체 선정 → [03]협약서 체결 및 사업시행 → [04]지사화 사업시행 → [05]무역관의 사업추진 내용 평가 → [06]A/S 신청

- (해외전시회) [01] 참가업체 모집(www.gep.or.kr) → [02] 참가 신청 업체 심사 후 선정 통보 → [03] 전시 일정, 부스 추첨 등 업무협의 실시 → [04] 해외무역관 잠재바이어 조사 → [05] 전시품 운송 및 전시회 참가 → [06] 전시회 참가 후 사후 관리(바이어 상담건 등)
- (중견기업 글로벌 육성 사업) [01] 월드클래스 300 모집공고(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1~2월) → [02] 월드클래스 300 선정(4~5월) → [02] 선정기업 대상 월드챔프 참가업체 유치 → [03] 기업별 로드맵 수립 → [04] 사업개시
- (글로벌마케팅인턴) [01] 공사 홈페이지 및 구인구직 포털 광고 → [02] 지원자 서류·면접심사 후 선발 → [03] 인턴 파견 예정자 대상 국내교육 실시 → [04] 해당 국가 및 산업별로 파견 → [05] 현지 교육기간 도중 인턴 수용 기업 간 매칭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무역보험기금출연(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무역보험기금출연	250,000	140,000	70,000	△70,000	△5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100 - 1138 - 881

* 담 당 자 : 무역정책국장(원동진), 수출입과장(김남규), 사무관(우혜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9년 ~ 현재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204조원(‘13년말 무역보험 지원규모)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2. 사업목적

☐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금융) 지원 및 플랜트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 주지원,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 출연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 70,000백만원
- 산출근거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지원 확대
 - 플랜트, 자원개발 등 해외 유망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 기금건전성 제고를 통한 무역보험기금의 대외신인도 제고

□ 지원 필요성

- 세계 경기침체 지속 및 환율급락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무역보험·무역금융을 통한 수출안전망 구축 필요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수출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수
 - * 중소·중견기업 직접지원 비중(조원): ('14) 40.5 → ('15) 43
- 발전·플랜트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는 수출자(시공사)의 금융조달력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
 - 무보는 보증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자금공여에 확실한 담보장치를 제공하며 수출자의 자금조달에 큰 기여
 - * 중장기성 보험 지원규모(조원): ('14) 18.5 → ('15) 21
-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무역보험지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누적으로 기금배수가 급등하여 기금건전성 악화
 - * 기금배수(배) : ('14) 84.4 → ('15) 76 내외
 - 무역보험 지원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수주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기금확충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무역보험기금출연	250,000	140,000	70,000	△ 70,000	△ 50
▪ 무역보험기금출연	250,000	140,000	70,000	△ 70,000	△ 50
☐ 출연금	250,000	140,000	70,000	△ 70,000	△ 50
○ 출연금(350)	250,000	140,000	70,000	△ 70,000	△ 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담보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

* 중소·중견기업 직접지원 비중(조원): ('14) 40.5 → ('15) 43

- 리스크관리 강화 및 기금출연 확대를 통해 기금배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기금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주력

* 기금배수(배): ('14) 84.4 → ('17) 60배수 내외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4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5	7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6	5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7	3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8	3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1조
 - 제30조(기금의 설치) :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 제31조(기금의 조성) :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수출지원 수단으로써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
 - (1992.7월) 수출보험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 (2010.7월) 수출보험법→무역보험법으로 개정, 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무역보험기금출연	1,000	300	2,500	1,400	7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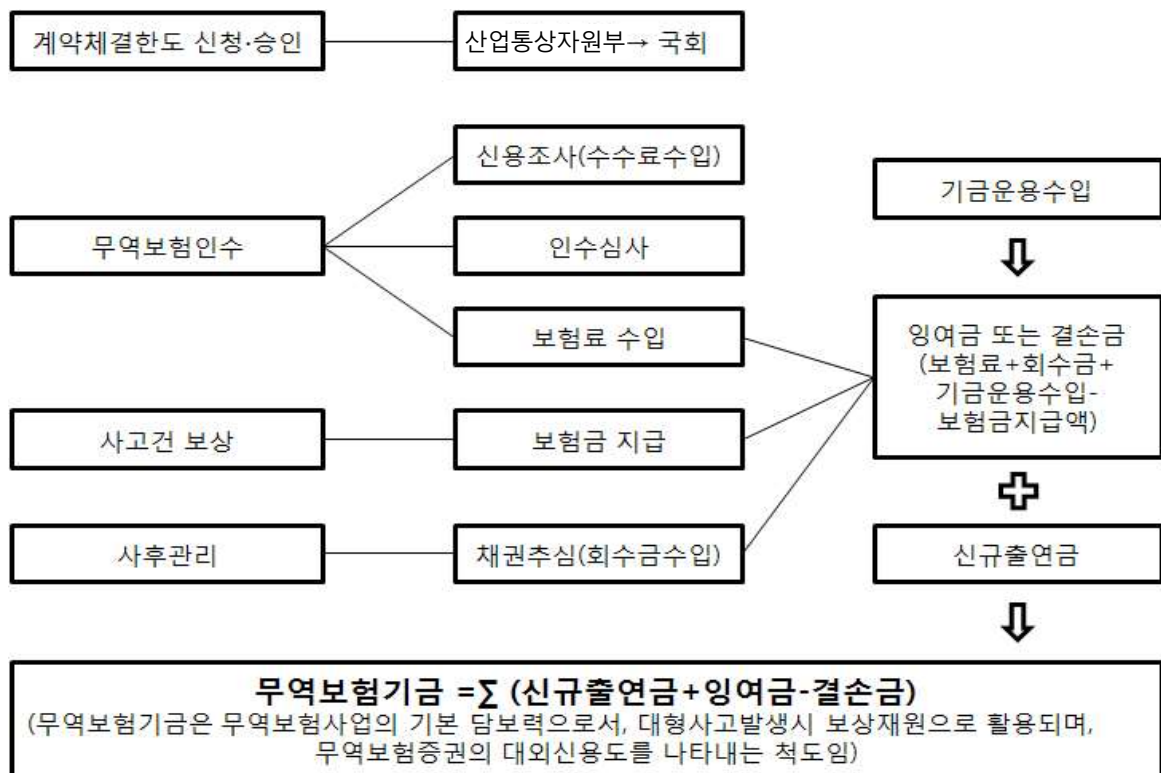
기관명	시기	지적·평가내용
기획재정부	'14년	'13년 기금운용평가 우수
기획재정부	'13년	'13년 기금존치평가 : 존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13년	'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기획재정부	'13년	'12년 기금운용평가 우수
기획재정부	'12년	'11년 기금운용평가 양호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수출입 및 금융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활성화되어 있으며, 현재 64개국 75개 기관에서 운영
- 운영방식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자국기업의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종 지급책임을 지는 정책사업으로 운영

정부부처 형태로 운영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전담 공기업 운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7)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별첨: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체결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기반구축사업(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 사업	1,150	1,737	1,563	-174	-10

* 사업코드 : 110-113-1100-1144-301(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 담당자 : 무역정책국(원동진), 무역정책과(조영태, 044-203-4020), 사무관(김용운, 402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 ~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2. 사업목적

- (무역정보의 복잡성 증대) FTA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비관세 장벽 확대 등으로 무역의 복잡성이 증대, 관련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 미국, EU, 아세안 등 FTA 간 상이한 규정으로 무역업체들이 알아야 할 관련 정보량이 급증하여 스파게티볼 효과 발생
- (무역정보의 부족) 상대국의 관세율, 내국세,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생생한 정보의 부족
- (무역정보의 산재) 국내 각 기관별로 무역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내수·중소기업의 무역정보 획득에 많은 노력과 비용 발생

☞ “여러 기관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나, 내가 찾는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찾기 쉽지 않으며,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힘들다” (P기업)

- (맞춤형 정보부족) 중소기업은 통합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받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는 관련된 정보를 단편적으로만 제공

☞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A기업)

- (정부정책반영)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개념을 적용해 기업들의 해외무역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

☞ “수출지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정부 3.0의 모범사례 될 수 있도록 하라” (VIP말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이와 같은 FTA 및 인증, 규격, 기술장벽(TBT) 등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와 해외오퍼, 해외기업정보, 시장보고서 등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무역정보를 통합, 품목별로 분류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무역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관세, 원산지 표시, 인증, 규격, 기술장벽, 환경규제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HS6단위(국제공통) 품목별로 DB화
 - 산재되어 있는 무역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Single-Window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국가별·품목별 통합무역정보 DB 구축(개발·구축) : 565백만원('14) → 999백만원('15)
 - 남아공, UAE,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역정보 조사
 - 각국의 세율, 수입규제 법령, 기술·환경규제, 인증, 마케팅 등 해외무역 정보 조사·수집·가공·번역
 - 남아공, UAE,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역정보 DB 구축
 - 다양한 형태(DB, 게시판, PDF 등)로 존재하는 무역정보의 표준화, 분류, 맵핑 작업 및 DB구축
 - 기존 DB Update(EU, 미국, 인도, 아세안, 중국, 대만, 홍콩, 브라질, 러시아, 일본, 터키, 호주, 캐나다)
 - 기 구축된 국가의 세율, 규제, 지원 정보에 대해 최신 무역정보 Update

< 산출근거 >

- 남아공, UAE,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역정보 조사

(단위 : 백만원)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총업무 가중치	업무 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계산
소요제기	6.3		25.6	조직규모	0.6	1,1232
타당성 분석	7.2			업무처리유형	1.6	
경영전략수립	7.2			사용자참여도	1	
정보구조 정의	6.4	6.4		기존시스템	1.3	
기술현황 분석	6.6	6.6		현장방문요구	1	
정보관리조직분석	6.4	6.4		업무의 특수성	1	
시스템구축전략 및계획수립	6.2	6.2		수행기간	1	
제안 요청서 작성	6.3			사용양식의 수	0.9	
컨설팅지수 계산	25.6 x 1.1232 = 28.75392					
공수(해당연도)	5,856,401원					
직접경비	0 (무역협회 부담)					
정보전략 계획 수립비	5,856,401원 x (28.75392) ^{0.95} +10,000,000원= 152,361,650					
소요예산	140,000,000					

- 남아공, UAE,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역정보 DB 구축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기술등급	M/M	금액/일	일	계	
직접 인건비	기술사	0	398,119	21	0	158,987,157
	특급	5	357,171	21	37,502,955	
	고급	8	266,590	21	44,787,120	
	중급	10	219,469	21	46,088,490	
	초급	8	182,194	21	30,608,592	
	총 M/M	31			158,987,157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174,885,87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66,774,606
부가세	• (직접인건비 + 제경비+기술료) * 10%					40,064,764
계						440,712,399
소요예산	439,000,000					

－ 기 구축된 49개국 관세, 수입규제 등의 DB를 최신 정보로 Update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기술등급	M/M	금액/일	일	계	
직접 인건비	기술사	0	398,119	21	0	153,821,766
	특급	4	357,171	21	30,002,364	
	고급	5	266,590	21	27,991,950	
	중급	10	219,469	21	46,088,490	
	초급	13	182,194	21	49,738,962	
	총 M/M	32.0			153,821,766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169,203,94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64,605,142
부가세	• (직접인건비 + 제경비+기술료) * 10%					38,763,085
계						426,393,935
소요예산	420,000,000					

② 해외시장 콘텐츠 강화(개발·구축) : 350백만원('14) → 326백만원('15)

- － 해외기업정보, 해외시장전문보고서 등 무역업체에게 필요한 해외시장 콘텐츠 강화
- －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해외기업정보에 대해선 지속적인 검증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산출근거 >

- －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해외기업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 실시
 - 해외기업정보(약 60만건) 중 10만건(25%)x검증작업x1,500*원/1건=150백만원
 - * 무역협회 바이어 DB 검증 단가 기준
- － 기업들의 해외 진출 필수 정보인 해외기업정보의 지속 확대 추진
 - 해외기업정보 구매 5만건 X 1,620*원 = 80백만원
 - * 해외기업정보 판매회사인 D&B의 판매 단가 기준
- － 오픈된 일반정보에서 전문 고급정보 제공으로 정보의 질적 추진
 - 해외시장 전문콘텐츠 월 4건 X 12개월 X 2백* = 96백만원
 -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Fros&Sullivan 단가 기준

③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개발구축) : 422백만원('14) → 238백만원('15)

- 남아공, UAE,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Data Base 추가/변경, 화면 개발, UI/UX 개편 등 시스템 개발
- 국가 중심의 무역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별 특화포털 구축
- 모바일 사용 증가에 따라 포털형태의 모바일 서비스로 개편

< 산출근거 >

- 시스템 개발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8,648	신규	299.0	0.650	1.00	1.1	-	21,089,463
설계	124,609	재개발	-				-	26,639,535
구현	166,145	재개발보정	-				1.12	39,781,626
시험	129,801	총점수	299.0				1.12	31,079,448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43,493,986
소요예산								143,000,000

- 모바일 서비스 개편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8,648	신규	176.0	0.650	1.00	1.1	-	13,965,597
설계	124,609	재개발	-				-	17,640,896
구현	166,145	재개발보정	-				1.12	26,343,685
시험	129,801	총점수	176.0				1.12	20,581,039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95,022,773
소요예산								9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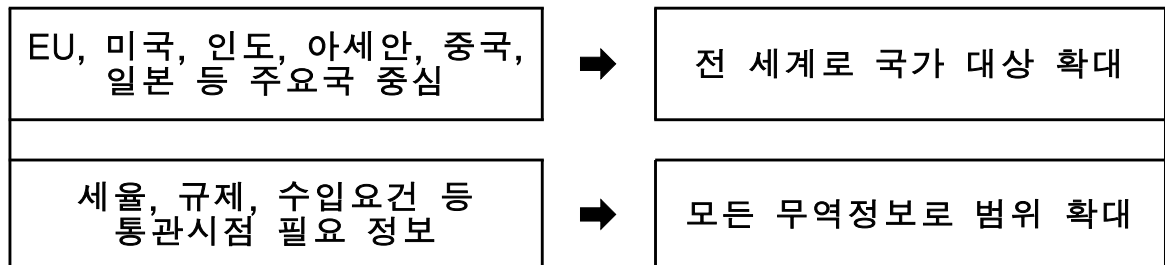
□ 지원 필요성

- (사업의 확대) VIP지시,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적용 등 기존 주요 상대국의 통관시점에 필요한 무역정보 제공에서 무역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 포털 역할로 사업이 확대

※ “수출지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정부 3.0의 모범사례 될 수 있도록 하라” (VIP말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주요국, 통관시점에 필요한 정보 위주에서 대상국가와 무역정보의 확대

<기 존>
<향 후>



- 기존 34개 정보 연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전문보고서 정보를 보유한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
- (지속적인 정보강화 필요) 기 구축된 정보를 최신정보로 Update하는 것은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콘텐츠의 신규 구축에 해당, 단순 업데이트와 구별
 -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신규 구축과 유사하게 각국의 최신 정보 획득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수집, 분석, DB화하는 작업이 수반됨
- (지속적인 기업의 정보 수요)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정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애로사항('13.3, 무협): 해외시장정보 부족(63.5%), 해외 규격·품질인증 미비(61.5%), 거래선 발굴(53.0%) 순
 - * 수출중기 애로조사('12년, 수은): 구매선확보(36.3%), 정보부족(25.0%) 순
 - * 수출중기 애로조사('12년, 전경련): 바이어발굴(36.7%), 통관 등 실무지식(21.2%) 순
- (무역정보의 증가) 최근 FTA 및 인증, 표준, 기술규제(TBT) 등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 정보가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
 - 특히, FTA 체제에서는 상호 호환성이 없는 수많은 무역규범과 새로운

경쟁 양태로 인해 무역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급증

- 이러한 정보의 수준과 양은 개별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국비 지원이 필요
- 현재 제공되는 무역에 관한 정보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고, 국가별·품목별로 정리·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은 트레이드 내비가 유일
- 유관기관에서 제공 중인 정보를 취합·연계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	1,150	1,737	1,563	-174	-10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900	665	999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250	422	238		
▪ 해외시장정보 연계강화	0	250	326		
▪ 통합해외시장정보 검색 추가	0	400	-		
☐ 비목	1,150	1,737	1,563	-174	-10
▪ 민간경상보조(320-01)	1,150	1,737	1,563	-174	-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을 고려 연차적으로 국가별·품목별로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출기업에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 665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 422 ▪ 통합 해외시장정보 검색 서비스 추가 : 400 ▪ 해외시장정보 연계 강화 : 250
'15	1,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 999백만원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38백만원 ▪ 해외시장콘텐츠 강화 : 326백만원
'16	1,6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 1,009백만원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백만원 ▪ 해외시장콘텐츠 강화 : 400백만원
'17	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 1,057백만원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백만원 ▪ 해외시장콘텐츠 강화 : 400백만원
'18	1,7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 1,106백만원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백만원 ▪ 해외시장콘텐츠 강화 : 4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및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 법률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분석 및 유통 촉진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무역정보망의 구축·운영

○ 추진경위

- 무역의 날 「수출 저변확대를 위한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전략」
(‘09.11.30) VIP보고 시 「FTA활용지원계획」 보고
- 제18차 FTA국내대책위원회에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보고 (‘10.7.15)
- 시행기관 협의 및 ‘11년도 예산 신청 (‘10.7~11월)
- 2011 FTA EXPO (‘11.3.2-3.4) 지식경제 FTA무역정보관 부스 참가 및 동 사업 홍보
- 지식경제부-무역협회 사업협약서 체결(‘11.4.18)
- 사전조사 및 전략수립 컨설팅 (‘11.5.16 ~ ‘11. 8.31)
- 1차년도 시스템 구축 (‘11.9.22 ~ ‘11.12.31)
- EU 집행위와의 상호 무역정보교환 합의 (‘11.10.24)
-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대통령 주재) 「FTA를 활용한 무역확대방안」에 사업추진 계획 등 보고 (‘11.12.22)

- 사이트 공식오픈 및 EU 무역정보 서비스 개시 ('12. 1. 16)
- EU 집행위와의 상호 무역정보교환 MOU 체결 ('12. 6. 28)
- 2차년도(미국, 인도, 아세안) 시스템 구축 ('12. 5. 9 ~ '12. 12. 31)
- 3차년도(중국, 대만, 홍콩, 브라질, 러시아) 시스템 구축('13.4.1 ~ '13.12.31)
- 수출지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정보연계·통합 VIP지시('13.7.11)
- 4차년도(일본, 터키, 호주, 캐나다) 시스템 구축('14.2.18 ~ '14.12.3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 사업	800	1,200	1,150	1,737	1,56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8			8	8		
	(8)	()	()	(8)	(8)	()	()
'12년	12			12	12		
	(12)	()	()	(12)	(12)	()	()
'13년	11.5			11.5	11.5		
	(11.5)	()	()	(11.5)	(11.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매우부족 등급으로 평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통합무역정보서비스와 유사한 해외사이트는 있으나, 수출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국가, 업종, 품목(HS코드)으로 통합·제공하는 사이트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가 유일

<서비스 비교표>

구 분	세 울	규 제	통 계	기업정보	FTA	지원사업	해외시장	수출절차
TradeNAVI	O	O	O	O	O	O	O	O
Market Access Database(EU)	O	△	O	X	X	X	X	O
EXPORT.GOV(미국)	X	X	△	X	O	O	O	O

* EU 규제정보의 경우 TBT통보문, 환경규제, 해외인증, 전락물자, 규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수입절차(요건) 중심의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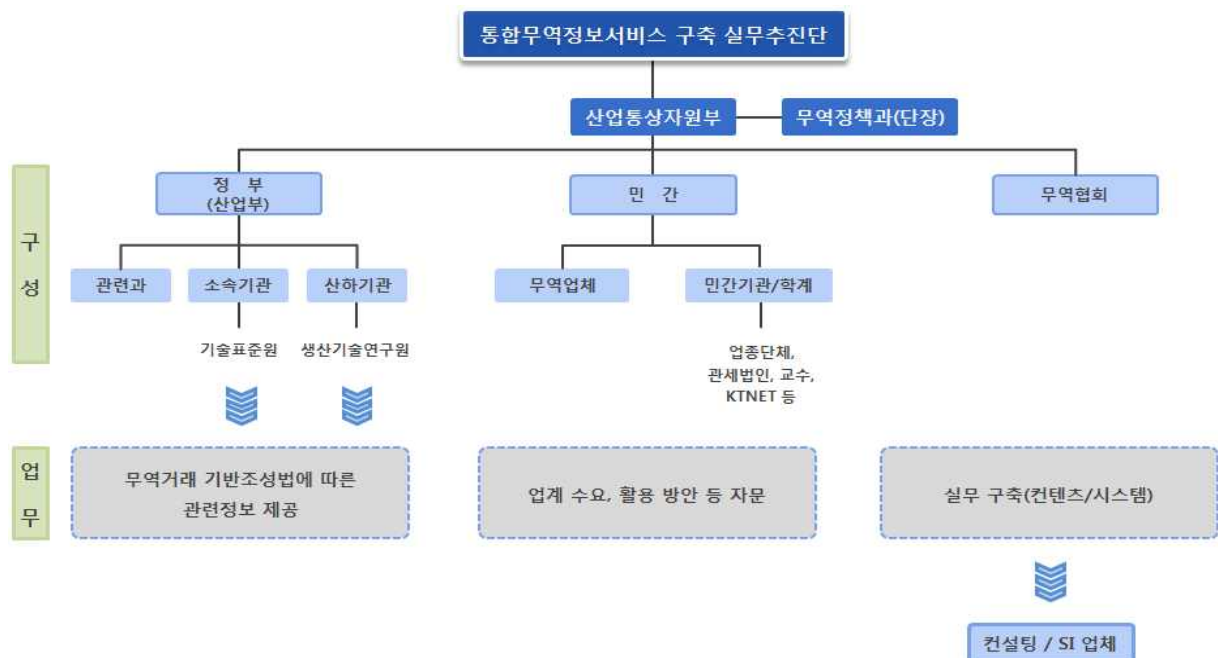
** 미국 통계정보의 경우 UN통계 사이트 링크 형식으로 안내

(5) 사업추진절차

<추진체계 >

구분	기관명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종합계획/사업총괄·감독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사업별 집행/관리
최종수혜자	무역업체 등	—

<사업추진 조직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	270	379	340	△39	△10.3

* 사업코드 : 21-39-3-110-114-3300-3361-303

* 담당자 : 무역정책관(원동진), 무역진흥과장(이경호, 044-203-4030), 주무관(이경은, 40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지자체보조(정률 50%)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목적

- 지역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역량강화 및 수출증대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200백만원
 - 산출내역 : 5회 × 80백만원 × 50%
- ② 무역사절단 파견 : 75백만원
 - 산출내역 : 3회 × 50백만원 × 50%
- ③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40백만원
 - 산출내역 : 1회 × 80백만원 × 50%

④ 글로벌온라인마켓 상품관 운영 : 25백만원

- 산출내역 : 1식 × 50백만원 × 50%

□ 지원 필요성

-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으로 수출역량 함양 및 수출증대 도모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품목과 수출국가를 다변화 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제주산업발전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	270	379	340	△39	△10.3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20	199	200	1	0.5
▪ 무역사절단 파견	70	100	75	△25	△25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70	70	40	△30	△42.9
▪ 글로벌온라인마켓 상품관	-	-	25	순증	
▪ 해외시장조사, 지사화 지원	10	10	-	순감	
☐ 비목	270	379	340	△39	△10.3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70	379	340	△39	△10.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마케팅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수출역량 함양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품목과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해외 마케팅지원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참가지원 : 199백만원(6회) ▪ 무역시절단 파견 : 100백만원(3회)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70백만원(1회) ▪ 해외시장조사, 지사화 지원 : 10백만원(20개사)
'15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참가지원 : 200백만원(5회) ▪ 무역시절단 파견 : 75백만원(3회)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40백만원(1회) ▪ 글로벌온라인마켓 상품관 : 25백만원(1식)
'16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참가지원 : 200백만원(5회) ▪ 무역시절단 파견 : 80백만원(3회)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45백만원(1회) ▪ 글로벌온라인마켓 상품관 : 25백만원(1식)
'17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참가지원 : 200백만원(5회) ▪ 무역시절단 파견 : 80백만원(3회)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46백만원(1회) ▪ 글로벌온라인마켓 상품관 : 25백만원(1식)
'18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참가지원 : 230백만원(5회) ▪ 무역시절단 파견 : 80백만원(3회)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45백만원(1회) ▪ 글로벌온라인마켓 상품관 : 25백만원(1식)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추진경위

- 지역산업 수출마케팅 강화대책(산업자원부, 04.2)
- 수출유관기관 제주 유치 등 사업지원 체계 구축
- 통상진흥 추진계획 수립(제주특별자치도, 매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	3	3	27	39	3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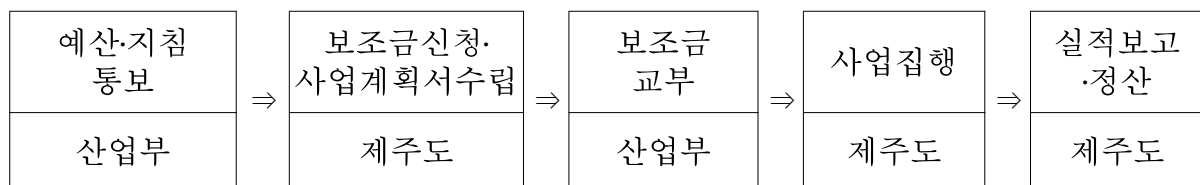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3			3	3		
	(3)	()	()	(3)	(3)	()	()
'13년							
	(2.7)	()	()	(2.7)	(2.7)	()	()
'14년							
	(3.8)	()	()	(3.8)	(3.8)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2,755	2,755	2,660	△ 95	△ 3.4
○ 해외진출기반구축 (1933-301)	2,555	2,555	2,460	△ 95	△ 3.7
○ 남북산업자원협력 (1934-301)	200	200	200	0	0.0
<지특회계>	70,226	148,441	81,262	△67,179	△45.3
○ 투자유치기반조성 (4901-302)	69,419	147,634	80,512	△67,122	△ 45.5
○ 투자유치기반조성정보화기반구축 (4901-303)	57	57	0	△ 57	△ 100.0
○ 투자유치기반조성(제 주) (4902-301)	750	750	750	0	0.0
총계	72,981	151,196	83,992	△67,204	△44.4

해 외 진 출 기 반 구 축 (계 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해외진출기반구축	2,555	2,555	2,460	△95	△3.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900 - 1933 - 301

* 담당자 : 투자정책관(김창규), 해외투자과장(박진서, 044-203-4090), 주무관(박재은, 409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6~ 계속
총사업비	해 당 없 음
사업규모	해 당 없 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대 한 무역 투 자 진 흥 공 사

2. 사업목적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성공적 해외투자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해외투자 지원 환경기반 조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법률·세무·노무·경영 등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통해 성공적 현지정착 및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비 1,205백만원
 - 산출내역 : 80.3백만원 × 15개 센터
- ②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 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상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비 220백만원
 - 산출내역 : 공기업 해외진출지원 협의회 운영 40백만원 + 해외투자 상담센터 운영 52백만원 + 해외진출기업 애로해소지원 58백만원 + 해외진출 지원기간 간 협력 강화 70백만원

- ③ 해외진출정보시스템 운영 : 해외투자진출 희망기업이나 해외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정보를 효과적으로 취합·전파하기 위한 유관기관(24개 기관) 통합 정보포털 서비스 운영 사업비 160백만원
- 산출내역 : 시스템 유지보수 95백만원 + OIS 콘텐츠 운영관리 인건비 45백만원 + 콘텐츠 확보 20백만원
- ④ 중소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이 해외 우수 기업의 경영자원(기술, 고객망, 브랜드 등)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 M&A를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800백만원
- 산출내역 : 해외딜소싱 450백만원 + 금융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260백만원 + 운영비 90백만원
- ⑤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희망 기업발굴, 기술컨설팅, 마케팅 및 해외 VC유치 등을 통한 국내 유망 기술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 75백만원
- 산출내역 : 기업발굴 10백만원+기술·마케팅 교육 20백만원 + 기업홍보 15백만원 + 현지 창업지원 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FTA 확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투자·경영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현지 애로해소* 등 지원 필요
 - *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결과(Kotra, 매년),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정보, ▲현지 네트워크, ▲경영 애로해소 상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 건의
- 특히, 신흥국에 대한 진출 확대로, 지역마다 다양한 현지 법률·세무·노무·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 애로해소 지원 수요도 급증
- 해외 M&A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지원 수요는 높으나, 시장에서는 소규모 M&A딜을 기피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
- 해외 M&A 지원 성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중

- * 국정과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글로벌역량 강화
VIP말씀('13.12월, 중기간담회):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적극지원”,
VIP訪英('13.11월), 訪獨('14.3월)시 ‘M&A활성화 지원협력 MOU’ 체결

[참고] 해외 M&A 주요 지원성과

- 동국실업 → 獨 ICT 인수('13년): 폭스바겐의 협력사로 생산의 80%납품
- 세아제강 → 伊 이녹스텍 인수('14년): 세계1위 강관제조업체 인수

- 기업은, M&A 유망매물 발굴, 회계·법률 실사 및 해외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애로*가 큰 상황으로, 정책 지원**을 희망

- * 해외M&A애로조사(중기중앙회, '13): ①매물 등 정보부족(32%), ②회계·법률·현지실사 등 경험부족(30%). ③자금조달 애로(19%) 등

** 법무법인 등 민간 M&A 지원기관은 3천만\$ 이하 소규모 딜 기피(1억\$이상 수입)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해외진출기반구축	2,555	2,555	2,460	△95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1,205	1,205 (80.3백만×15개센터)	1,205 (80.3백만×15개센터)	0	
▪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240	220 (공기업해외진출협의회운영 40백만+상담센터운영52백 만+애로해소지원58백만+ 기관협력강화70백만)	220 (공기업해외진출협의회운영 40백만+상담센터운영52백만 +애로해소지원58백만+기관 협력강화70백만)	0	
▪ 해외진출정보시스템운영	180	160 (시스템유지보수95백만+인 건비45백만+컨텐츠20백만)	160 (시스템유지보수95백만+인건 비45백만+컨텐츠20백만)	0	
▪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 센터 운영	850	810 (해외딜소싱450백만+금융 기관NW구축 및 컨설팅 비용지원270백만+기타 운영비 90백만)	800 (해외딜소싱450백만+금융기 관NW구축 및 컨설팅 비용지원260백만+기타 운영비 90백만)	△10	
▪ 글로벌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지원	-	160 (기업발굴10백만+마케팅교 육50백만+기업홍보 40백만 +창업지원60백만)	75 (기업발굴10백만+마케팅교육2 0백만+기업홍보 15백만 +창업지원30백만)	△85	
☐ 해외진출기반구축	2,555	2,555	2,460	△95	
○ 민간경상보조(320-01)	2,555	2,555	2,460	△9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투자 및 현지 정착을 위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한 해외투자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5.6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1,205), OIS시스템 운영(160),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220),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810),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160)
'15	24.6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1,205), OIS시스템 운영(160),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220),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800),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75)
'16	28.5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1,261), OIS시스템 운영(160),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220),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960),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250)
'17	28.3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1,261), OIS시스템 운영(160),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220),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940),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250)
'18	23.3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1,094), OIS시스템 운영(160),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200),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730),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15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8조: 해외진출기업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코트라에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제6항: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 추진경위

- '07.2.28 : 범부처 차원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 '07.12월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VIP 시연회('07.6.20)후 공식 오픈
- '09.10월 : 대외무역법 시행('09.4월)에 따라 KOTRA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립
- '12.12월 : 해외 M&A 활성화 대책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1월 : “해외 기업협업체 활성화방안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3월 : “해외 M&A 활성화” 보완대책 발표
- '14.3월 : 글로벌 M&A센터 설립 1주년 성과보고대회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해외진출기반구축	25	22.5	25.6	25.6	24.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5			25	25		
	(25)	()	()	(25)	(25)	()	()
'12년	22.5			22.5	22.5		
	(22.5)	()	()	(22.5)	(22.5)	()	()
'13년	25.6			25.6	25.6		
	(25.6)	()	()	(25.6)	(25.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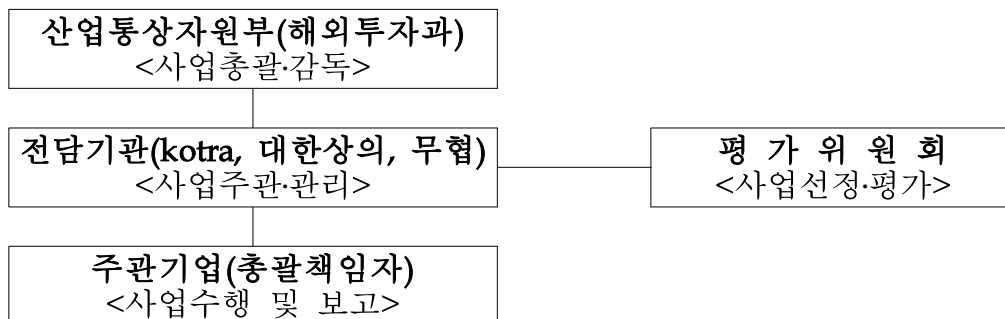
-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JETRO 및 JBIC의 해외투자기업 지원
 - 전액 정부출자 특수법인인 일본무역진흥회(JETRO)를 통하여 57개국 78개소 사무소 운영하고, 각 현지사무소 내 투자팀을 통하여 지역전문가를 통한 현지투자상담, 지역투자설명회, 투자가이드 및 현지투자리포트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
 - 이외에 On-line matching 서비스인 TTPP(Trade Tie-up Promotion Program)사업, LL(Local to Local)사업을 수행
 - 국제협력은행(JBIC)를 통해 해외 M&A 등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10조엔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 중

(5) 사업추진절차

- 해외진출기반구축 사업 기본체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남북산업자원협력(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남북산업자원협력	200	200	200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900 - 1934 - 301

* 담당자 : 투자정책관(김영삼), 남북경협팀(전제구팀장님, 044-203-4062), 주무관(박영희, 406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무역협회

2. 사업목적

- 남북한 경제협력 및 대북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산업·자원분야의 협력방안 모색 및 개성공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입주기업 등 남북경협기업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남북경협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150백만원

- 남북교역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대상 개별기업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130백만원)

* 26개사×5백만원=130백만원

- 무역 실무교육, FTA 활용교육(안내책자 발간) 등 실시(20백만원)

② 남북경협 기반구축 지원 : 50백만원

- 남북산업자원혁신 포럼, 전문가 또는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50백만원)

* 유관기관 포럼 운영: 6회(격월)×3.33백만원=20백만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6회×5백만원=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비한 남북 산업자원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여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반 마련 필요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마케팅활동 등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남북산업자원협력	200	200	200	-	-
▪ 남북경협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108	175	150	△25	△14.3
▪ 남북경협 기반구축 지원	92	25	50	25	100
□ 비목	200	200	2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200	200	2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남북산업자원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남북경협기업의 투자·교역 확대 유도
-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경영·마케팅 활성화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남북산업자원협력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조사, 전문가 포럼운영 등을 통해 남북경협기업이 적극적으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1.15) ▪ FFTA활용 교육(0.05) ▪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0.8)
'1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1.3) ▪ FTA활용 교육(0.2) ▪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0.5)
'1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1.3) ▪ FTA활용 교육(0.2) ▪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0.5)
'1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1.3) ▪ FTA활용 교육(0.2) ▪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0.5)
'1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1.3) ▪ FTA활용 교육(0.2) ▪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0.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한반도경제 구상」('06.6월 국무회의) 보고시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경협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일반예산 투입 필요성 제기
- '08.3월, 남북산업자원협력 기반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 무역협회 지정

- '08.4월, 남북산업자원혁신 포럼 시작
- '08.11월, 북한상품 홍보전 개최(12개 업체 참석)
- '09.4월, 개성공단 및 남북교역상품 홍보전 개최(14개 업체 참석)
- '10년, 개별기업 8개사 5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1년, 개별기업 6개사 6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2년, 개별기업 10개사 7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3년, 개별기업 14개사 마케팅활동 지원, 5개사 공동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4년, 개별기업 28개사 마케팅활동 지원, 5개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남북산업자원협력	1.12	1	2	2	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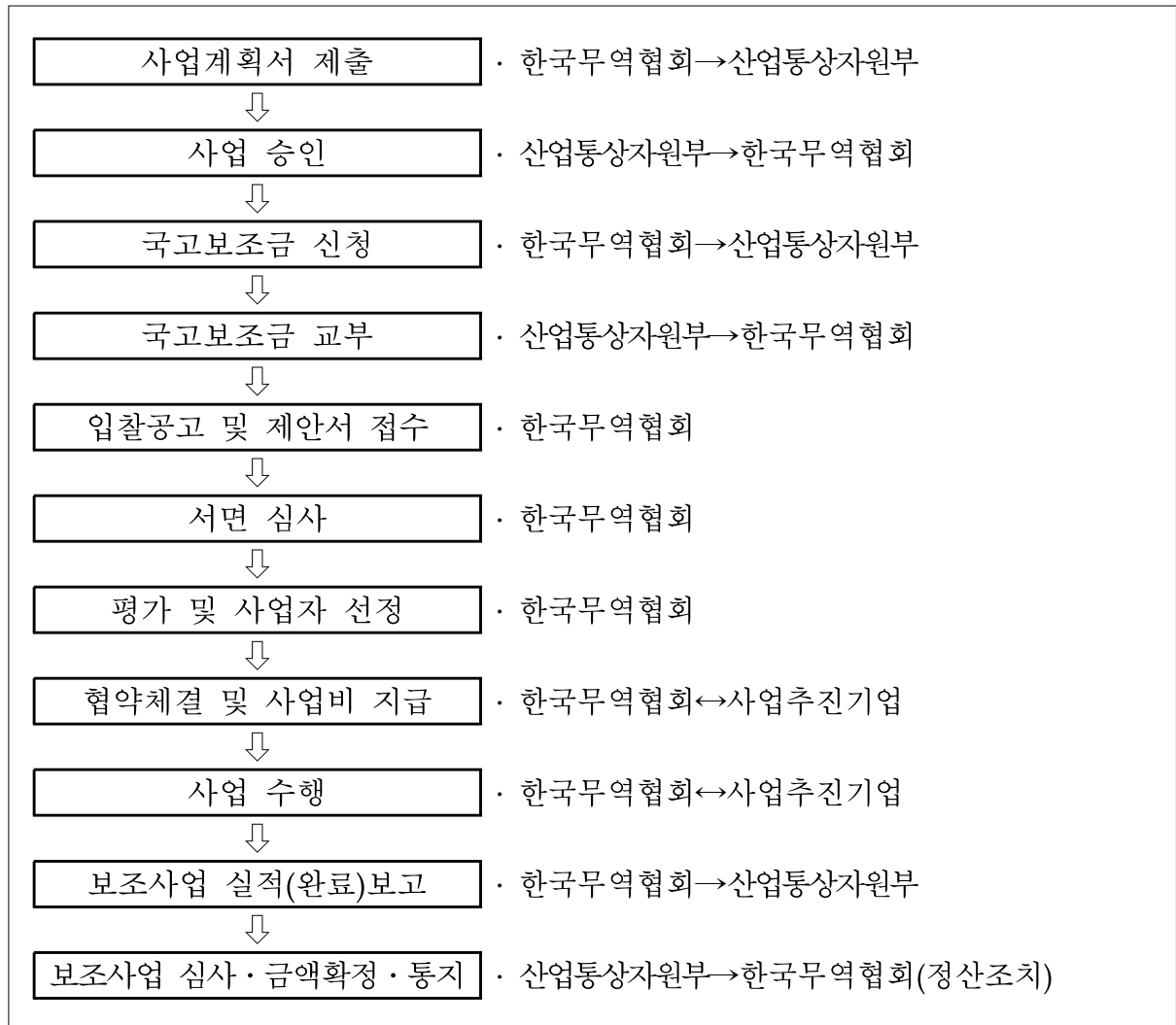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투자유치기반조성(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투자유치기반조성	69,419	147,634	80,512	△67,122	△45.5

* 사업코드 : 110-113-4900-4901-302

* 담당자 : 투자정책국(김영삼), 투자정책과(김용채, 044-203-4070), 주무관(신국재, 407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4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KOTRA 등

2. 사업목적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 첨단기술 도입, 수출증대 및 일자리 확보, 산업기반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토지매입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저가에 외투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54,925백만원

▪ 산출내역 : 15개 외투지역 × 3,661백만원

- ② 현금 지원(Cash Grant) : 고도기술 수반사업, 대규모 고용창출 사업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FDI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17,130백만원

- 산출내역 : ('14년) 2013년 이전 계약 4건 9,000백만원 + 2014년 신규 계약 5건 10,507백만원 → ('15년안) 2015년 이전 계약 5건 10,000백만원 + 2015년 신규 계약 4건 7,130백만원

< 지원대상 및 용도 >

- 지원대상 :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품소재, 대규모 고용창출사업, R&D 연구시설
- 지원용도 : 토지, 건물 매입비, 임대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지원금액 : 협상을 통해 FDI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③ 투자유치활동비 :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가 초청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7,478백만원**

- 산출내역 : ('14년) 4개분야 x 2,236백만원 → ('15년안) 4개 분야 x 1,869.5백만원
- * 유치활동(국내외 IR, 상품화, 프로젝트 점검 등), 기반조성(행사, 홍보, 포럼 등), 환경개선(원스톱서비스, 고충처리활동 등), 연구및조사(경영실태조사, 시스템 개선 등)

④ 국내복귀기업지원 : U턴기업 선정, U턴기업 지원센터, 해외 U턴기업 지원데스크 운영 등 **729백만원**

- 지원센터 : 249백만원, 지원데스크 : 80백만원 x 6개 (전년동)

⑤ 연구용역비 :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백만원**

- 산출내역 : ('14년) 50백만원 x 6개 과제 → ('15년안) 50백만원 x 5개 과제

□ 지원 필요성

- 외국인투자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기술 유입 및 약 14,000여개 외투기업이 고용창출 및 수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약 14,000여개 외투기업이 437,986명 고용(이 중 제조업 고용은 247,487명)
- *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비중은 총 수출의 20/2 %, 총 부가가치의 11.0%('12년)

-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양질의 FDI 유입 등 역할확대 필요

- 국내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양질의 FDI 유치 필요
- 시장확대, 관세인하 등 FTA 효과 및 국제 환경변화를 활용, 집중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투자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	69,419	147,634	80,512	△ 67,122	△ 45.5
▪ 토지매입비	55,221	118,154	54,925	△ 63,229	△ 53.5
▪ 현금지원	5,805	19,507	17,130	△ 2,377	△ 12.2
▪ 투자유치활동비	6,577	8,944	7,478	△ 1,466	△ 16.4
▪ 외국인학교건립	1,000	-	-		
▪ 외국인학교운영	60	-	-		
▪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729	729	0	0.0
▪ 연구용역비	27	300	250	△ 50	△ 16.7
☐ 비목	69,419	147,634	80,512	△ 67,122	△ 45.5%
▪ 국외여비	-	-	40		
▪ 연구개발비	27	300	250	△ 50	△ 16.7%
▪ 민간경상보조	7,306	9,673	8,167	△ 1,506	△ 15.6
▪ 민간자본보조	5,805	19,507	17,130	△ 2,377	△ 12.2
▪ 자치단체경상보조	60	-	-		
▪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	-		
▪ 토지매입비	55,221	118,154	54,925	△ 63,229	△ 53.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 확대
- 선진국과 신흥자본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추진
- 외투기업의 애로해소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개선
- 현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매입비(118,154백만원), 현금지원(19,507백만원) 투자유치활동비(8,944백만원), 연구용역비(300백만원)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15	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매입비(54,925백만원), 현금지원(17,130백만원) 투자유치활동비(7,478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16	7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매입비(50,899백만원), 현금지원(17,130백만원) 투자유치활동비(7,478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17	7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매입비(50,899백만원), 현금지원(17,130백만원) 투자유치활동비(7,478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18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매입비(47,075백만원), 현금지원(17,130백만원) 투자유치활동비(7,478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4. 1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제도 도입(부지매입, 분양가차액지원 방식)
- '98. 1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도입(부지매입 방식)
 - * 각종 지원제도 도입(분양가차액보조, 인프라설치지원, 고용 및 훈련보조)
- '03. 9 : 「외국인투자종합대책」 수립(국무회의 보고)
- '03. 12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 현금지원(Cash Grant)제도 도입, PM제도(Project manager) 도입
- '04. 4 : 「지자체의 외투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 '05. 1 : 외국인투자유치사업중 지자체보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09. 5 :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일반,균특)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사업재편
- '09. 9 : 사업명을 “외국인투자유치”에서 “투자유치기반조성”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투자유치기반조성	712	973	1,611	1,476	80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도

- 불용 : 고용및훈련보조 5.7억원, 외국인학교운영 30백만원, 용역비 3백만원

○ '12년도

- 불용 : 고용및훈련보조 2.7억원, 외국인학교운영 60백만원
- 이월 : 연구용역 27백만원
- 전용 : 현금지원 4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여 집행

○ '13년도

- 불용 : 부지매입비 608.7억원, 현금지원 1.2억원, 투자유치활동비 8.9억원, 외국인학교건립 22억원, 연구용역비 0.4억원
- 이월 : 부지매입비 192.7억, 현금지원 80.7억, 연구용역비 2.6억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712			712	706		6
	(712)	()	()	(273)	(706)	()	(6)
'12년	972		±40	972	968	0.2	27
	(972)	()	(±40)	(972)	(968)	(0.2)	(27)
'13년	1,611	27		1,611	694	275	641
	(1,611)	(27)	()	(1,611)	(694)	(275)	(64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우수
- '13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싱가포르 지원 사례

-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경제개발청(EDB)이 개별 투자건마다 비공개로 결정

○ 중국의 지원 사례

- 중앙정부에서 경제개발구등의 재정수입에 대하여 상납 면제 및 기 납부된 재정수입의 반환조치 등을 통하여 재정보조를 실행하고 있으며, 개발구는 이러한 재정보조를 이용하여 개발구내 외자기업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의 일정액을 반환해 주는 등 보조금 지급

○ 아일랜드 지원사례

- 아일랜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일랜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Package로 지원 결정

(5) 사업추진절차

- 외투자지역 지정 요청(지자체) → 외투자지역 지정 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토지매매계약(국가, 지자체, 소유주) → 부지매입비 예산지원(국비, 지방비)
- 현금지원 신청(외투기업) → 현금지원 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현금지원계약(국가, 지자체, 외투기업) → 현금지원 예산지원(국비, 지방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750	750	750	-	-

* 사업코드 : 21-39-3-110-114-4900-4902-301

* 담당자 : 투자정책관(김영삼), 투자유치과(주소령, 044-203-4080), 주무관(김동원, 408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75%, 제주특별자치도 25%)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목적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추세를 외국인투자 유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휴양관광지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관광·레저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촉진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투자유치기반조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지역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750백만원 요구(외국인투자유치 기반시설 1식)
 - 산출내역('14년 동일) : 1,000백만원(1년차 사업비) × 75%(국가보조율)

□ 지원 필요성

- 제주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인프라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확보,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모

-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단지 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향후 교통수요에 대응
- 본 사업은 최초로 중국인 투자가가 참여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의 성패가 향후 중국 기업의 對韓 투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사업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750	750	750	-	-
▪ 인프라설치지원-외투자지역진입로확포장	750	750	750	-	-
☐ 세출예산비목(합계)	750	750	750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3)	750	750	75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주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경영활동 지원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 마련
- 최근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 급증 추세를 외국인투자유치와 연계하기 위하여 「종합휴양관광지」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관광·레저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도모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5	▪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15	7.5	▪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16	7.5	▪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17	7.5	▪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18	7.5	▪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지원항목 및 비율)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다음 각목의 조성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수도권외의 경우 100분의 40, 기타지역의 경우 100분의 75를 지원

○ 추진경위

- '98. 11.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05. 1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중 지자체보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09. 5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일반,균특)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편되면서 균특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광특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분리

- '09. 9 '10년 사업명을 “외국인투자유치(제주)”에서 “투자유치기반 조성(제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10	0	7.5	7.5	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도 지원 예정이었던 「웨딩테마파크」사업 해외투자자(중국 천혜그룹)의 투자포기로 지원 대상 사업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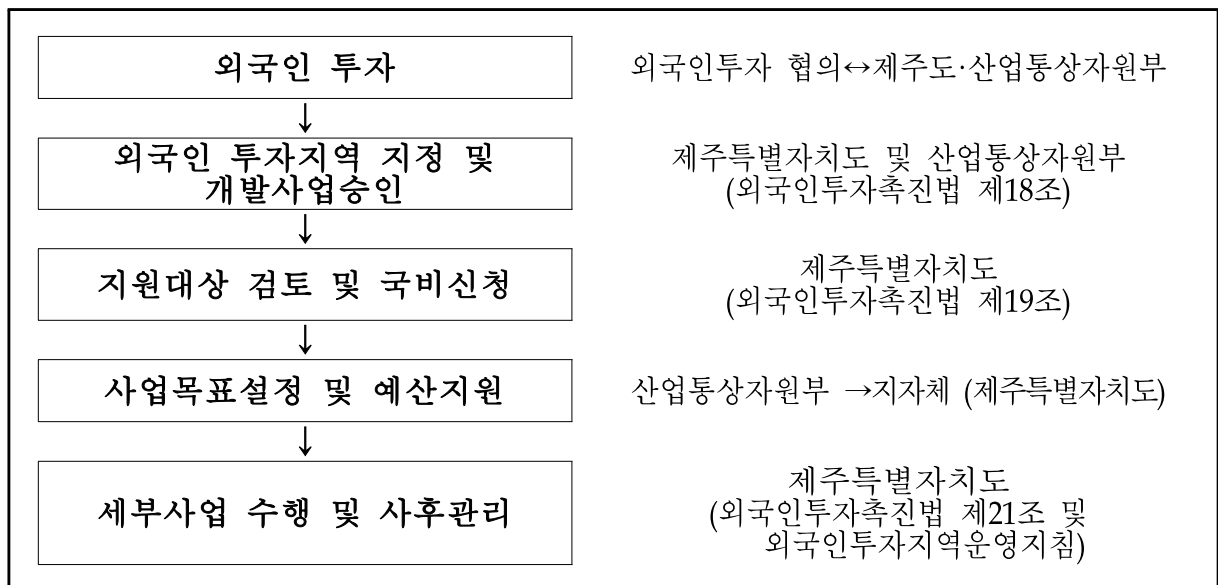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0	-	-	10	-	-	10
	(10)	()	()	(10)	()	()	(10)
'12년	-	-	-	-	-	-	-
	()	()	()	()	()	()	()
'13년	7.5	-	-	7.5	7.5	-	0
	(7.5)	()	()	(7.5)	(7.5)	()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없음

통상국내대책관

통상국내대책관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5,614	10,633	10,292	△341	△3.2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5,614	10,633	10,292	△341	△3.2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	5,614	10,633	10,292	△341	△3.21

* 사업코드 : 21-11-00-110-113-1900-1935-301

* 담당자 : 통상국내대책관(이호동), 총괄기획과장(정창현, 044-203-4120), 주무관(김민수, 41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6~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사업목적

-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FTA 관련 실용적인 정보를 적실성 있게 제공하고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중소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과 정보부족을 해소하고 FTA체결에 따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FTA 활용촉진 사업을 추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 ('14) 6,532 → ('15) 6,232백만원>

①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14) 3,732 → ('15) 3,732백만원

- FTA 현장 컨설팅 : 1,200백만원 = 300개 중소기업×4백만원
- FTA 지역센터에 관세사 등을 파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만건 이상의 전문상담 제공 : 2,500백만원 = 50명×50백만원
- 재직자 원산지 교육 : 32백만원

②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 : ('14) 1,700 → ('15) 1,700백만원

- 현행 16개 지역센터(15개 광역시·도 설치, 서울 제외, 경기 2개)에 센터당 평균 1.1억원(지자체 매칭지원 별도)

③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 ('14) 600 → ('15) 300백만원

- '14년 농식품업종 특화시스템 구축 종료(△300백만원), 원산지관리 시스템 고도화(300백만원, 전년동)

④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14) 400 → ('15) 400백만원

-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
400백만원 = 16개 지역센터×50백만원×0.5(5:5매칭)

⑤ 1380 FTA 통합콜센터 : ('14) 100 → ('15) 100백만원

- 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6.24 개소)의 운영비 50% 지원 (무역협회와 분담)

< FTA전문인력 양성 : ('14) 2,250 → ('15) 2,250백만원>

⑥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 ('14) 1,300 → ('15) 1,300백만원

- 중소기업 FTA 활용을 선도할 석사급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7개대학 × 1.9억원 지원

⑦ 대학 FTA 강좌개설 지원 : ('14) 500 → ('15) 500백만원

- 상경계 학과(경영, 무역, 국제관계, 통상 등)에 FTA활용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활용 기초 실무인력 양성**

* (대학강좌개설) 25개 대학*2개 학기*10백만원 = 500백만원

⑧ FTA 전문컨설턴트 양성 : ('14) 300 → ('15) 300백만원

- 무역전문 퇴직인력을 FTA 컨설턴트로 양성하여 산업현장 FTA 전문가 부족 해결

* 160명×2.1백만원×정부지원 90%(교육비 10% 자부담)=300백만원

< 여타 교육기관의 FTA활용관련 교육비 현황 >

구분	무역협회(아카데미)	능률협회	원산지정보원	계(평균)
과정명	FTA종합실무과정	원산지관리 실무	원산지관리 실무	
단가	18.3천원/시간	12.5천원/시간	14.5천원/시간	15.1천원

⑨ FTA 이러닝 : ('14) 150 → ('15) 150백만원

- FTA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FTA 기본 및 활용편(대학강의용, 기업실무자용) 3개 강좌를 운영

* 웹호스팅 (48백만원, 4백만원*12개월), 교육관리 대행 (42백만원, 3.5백만원*12개월) 콘텐츠 유지보수(30백만원), 신규콘텐츠 개발(30백만원)

< FTA국내대책 등 추진 지원 : ('14) 1,851 →('15) 1,810백만원>

⑩ FTA 홍보 : ('14) 1,000 → ('15) 1,000백만원

- FTA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수행

* 상시홍보 800백만원(월간 FTA발행, 웹사이트 유지, 포탈검색광고 등), 계기홍보(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TPP, 중국 등 FTA 체결 및 발효) 200백만원

< '08~'15 FTA 홍보 예산현황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34	81	42	70	18	12	10	11
예 산	34	18	42	25	18	12	10	10
예비비	-	63	-	45				

⑪ FTA 설명회 등

○ (FTA 이행상황 평가) : ('14) - → ('15) 130백만원

- 통상절차법 15조에 따라 체결 후 5년 경과한 FTA에 대해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의무규정)

. '15년은 한·ASEAN* FTA 80백만원, 한·인도 FTA 이행평가 50백만원 소요

* 12개국인 ASEAN은 우리수출규모가 중국에 이어 미국·EU 보다도 큰 2위

* 한·칠레 FTA 평가('12)는 80백만원 소요(수용비 전용 충당), EFTA·싱가포르 평가('14)는 50백만원(기조실 기획연구비 충당)으로 공개입찰 중이나 용역규모 대비 예산 부족을 사유로 참여에 난색을 표명(KIEP, 6월 현재)

※ 특히 국회 통상특위 등에서 FTA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관심에 대응하여 전문 연구결과를 '15年中 한·중 FTA 비준동의와 연계·제시할 필요
(추가소요 : 한·미, 한·EU FTA 이행평가 선행연구 300백만원)

○ (FTA 설명회) ('14) 100 → ('15년) 100백만원

- 16개 시·도 합동 FTA 관련기관 워크숍, 시·도 FTA 정책협의회, FTA 업종별 설명회 등 : 10회×10백만원

○ (본부 운영비) 통상국내대책국 운영비 : ('14) 751 → ('15) 580백만원

- 운영경비 751백만원에서 171백만원을 기본경비로 과목 구조개편(기재부)

□ 지원 필요성

- 중소기업의 FTA 활용수준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지원 사업 추진 필요
- 통상협정 체결에 대한 적실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 수립·시행과 대국민 홍보 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5,250	10,633	10,292	△341	△3.2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1,534	6,532	6,232	△300	△4.6
▪ FTA 전문인력양성	1,362	2,250	2,250	0	0
▪ FTA 국내대책 등 추진지원	2,354	1,851	1,810	△41	△2.2
□ 비 목	5,250	10,633	10,292	△341	△3.2
▪ 기타직보수(110-01)	57	82	-	△82	-100.0
▪ 수용비(210-01)	1,693	1,882	1,588	294	△15.6
▪ 공요금및제세(210-02)	20	20	20	0	0
▪ 특근매식비(210-05)	57	59	-	△59	△100.0
▪ 임차료(210-07)	42	20	20	0	0
▪ 복리후생비(210-12)	-	1	-	△1	△100.0
▪ 차량선택비(210-10)	2	-	-	0	0
▪ 위탁사업비(210-15)	2,873	2,700	600	△2,100	△77.8
▪ 기타운영비(210-16)	41	20	-	△20	△100.0
▪ 국내여비(220-01)	29	73	70	△3	△4.1
▪ 국외여비(220-02)	51	50	50	0	0
▪ 사업추진비(240-01)	37	36	36	0	0
▪ 관서업무비(240-02)	115	130	126	△4	△3.1
▪ 연구개발비(260-00)	200	100	230	130	130.0
▪ 민간경상보조(320-01)	-	5,432	7,532	2,100	38.7
▪ 연금지급금(320-03)	3	8	-	△8	△100.0
▪ 자산취득비(430-01)	30	20	20	0	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FTA 활용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피해산업의 보완대책 점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0,6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6,532 ▪ FTA전문인력 양성 2,250 ▪ FTA 국내대책 등 1,851
'15	10,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6,232 ▪ FTA전문인력 양성 2,250 ▪ FTA 국내대책 등 1,810
'16	9,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5,484 ▪ FTA전문인력 양성 1,980 ▪ FTA 국내대책 등 1,593
'17	9,7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5,922 ▪ FTA전문인력 양성 2,138 ▪ FTA 국내대책 등 1,722
'18	8,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5,033 ▪ FTA전문인력 양성 1,817 ▪ FTA 국내대책 등 1,46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 20066호)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추진경위
 - 2006. 8월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발족
 - 2007. 5월 FTA 국내대책위원회·대책본부
 - 2013.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직이관
- *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대한 국내대책의 총괄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86	68	70	56	10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6,761	2,709	4,484	13,954	12,741	667	546
	()	()	()	()	()	()	()
'12년	7,018	667		7,685	7,210	285	190
	()	()	()	()	()	()	()
'13년	5,614	285		5,899	5,250	145	504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2011년 국회 지적사항】

<지적내용>

- 인건비는 36.6%, 인건비와 관련된 민간이전은 17%, 여비는 60.2%의 낮은 집행율을 보였는데, 이는 적정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보임
- 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76억 5,800만원 중 34.1%에 해당하는 26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편성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여부를 뒤늦게 결정하거나 예산상 각목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서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음.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12년 예산은 전년대비 인건비는 30.4%, 여비는 19.1%, 민간이전은 25.7% 각각 감액하여 편성
- 예산 불용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 회계 연도 중 지속적인 예산 집행 현황을 관리 감독

【2012년 국회 지적사항】

<지적내용>

- FTA홍보비의 과다편성보다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설명회, 교육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
- FTA활용과 관련한 유사사업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각 사업간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것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FTA효과극대화방안 및 세부추진과제('12.3월)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각 사업별 효율화 방안을 추진
-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12.7월)하여 중복과 소외를 방지하고 기관별로 차별화된 컨설팅 제공

【2013년 국회 지적사항】

<지적내용>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관세사가 매년 3월말에 계약체결·파견되어 현장에 3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고, 12개월분 사업비가 불필요
- 조직개편 후 상설화된 조직임을 감안할 때 현행 사업비에 포함된 기본경비를 사업비와 분리할 필요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사 계약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14년부터는 2월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1년(차년 1월까지)으로 하여 현장 공백을 방지
- '14년 예산편성시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직접추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